2014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2014. 6.



목 차

l	•	법인세법	1
	1.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범위의 명확화	• 1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및 공제율 확대	. 2
	3.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간편화	. 4
	4.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시기 합리적 조정	. 5
	5.	외국납부세액 수정신고 기준 완화	• 6
	6.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 7
	7.	직접사업목적의 채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시 대손금 손금인정	. 9
	8.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 허용	11
	9.	적격분할시 주식보유 사후관리 규정의 주식 보유비율 현실화	13
	10	. 물적분할후 추가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	14
	11	.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능 주식 범위 보완	15
	12	. 외국법인간 적격요건을 만족한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16
	13	. 특정인에 광고선전목적 기증 물품의 손비 한도 상향	16
		. 접대비 한도액 상향 조정	
	15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 한도 상향 조정	19
	16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추가	2 0
	17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21
	18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개선	22
		. 송주법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제외	
	20	. 소액채권의 대손금 상향 조정	2 5
		. 수익적지출 특례 기준의 금액 상향 조정	
		.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액 추계시 산정방식 개선	
	23	조언원에 대하 사태보조근이 부단해의계사이 부이 민 언무무과 가지근근	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31
2	4. 특수관계자 대여금 중 5년 초과분 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4
2	5. 연결자법인의 배제후 연결 납세방식 적용 제한 폐지36
2	6. 연결납세 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37
2	7.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개선39
2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합리적 개선41
2	9.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변경43
3	0.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개선 44
3	1. 연말정산 서류 보관 의무 기간 축소45
3	2. 지급조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하향 조정46
3	3. 소멸시효 경과 대손 인정48
3	4.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거래 규정 보완 49
3	5.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 작성 합리화52
3	6.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53
3	7. K-IFRS 도입에 따른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비용배분 제외54
3	8. 특허권 내용연수 기간 축소55
3	9.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 개선
Π .	조세특례제한법59
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59
2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60
3	. 각종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61
4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62
5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63
	. 국내외 조림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64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66
8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지역 확대67

	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68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 완료기준 공제 적용	69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1인당 공제세액 상향 조정	·· 71
	1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72
	13. 이월세액공제 공제기한 연장	75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76
	15. R&D 세제지원항목에 위탁분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포함	·· 77
	16. R&D 위탁·재위탁시 세액공제 적용 위한 증빙 종류 입법화	79
	17. R&D세액공제 및 R&D투자세액공제의 최저한세적용 배제	80
	18. 최저한세 과세표준 계산시 R&D준비금 차감조정	81
	19.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확대	82
	20.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내국법인으로 확대	83
	21. 에너지절약시설 녹색성장 관련 범위 확대	84
	22.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범위 확대	85
	23.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단축 또는 이원화)	86
	24.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87
	25. 제3자 물류비세액공제 기준금액 계산방식 변경	89
	26. 적격합병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명시	90
	27.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91
	2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기준 완화	92
	29.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관련 대금 수취시기 명확화	94
	30.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상향	95
	31. 중고차 부가세 산정방식을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	96
	3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면제	97
	r કો ઢેકો હો ઝૂકો હોકો	00
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8
	1. 일감주기과세의 간접수출 제외대상에 일반법인 포함	98

2. 일감주기과세에서 타기업집단과의 거래 제외100
3. 일감주기과세에서 프로야구구단 계열사 광고매출 제외101
4. 업종별 정상거래 비율 현실화103
5. 일감과세 제외 수출범위에 용역수출 포함104
6.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합리화 ························105
7.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도 인정106
8. 負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107
9.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선108
መ/ አርህዝ
Ⅳ. 소득세법 ····································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109
2. 소득세법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 범위 축소 110
3. 300만원 이내 비과세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국외 근로자 범위 확대111
4.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른 연금 외 수령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전환113
5.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자가운전보조금 금액 인상115
6.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식대 금액 인상116
7. 소득세법상 기부금(개인) 공제 확대117
8.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 법률과 시행령 적용시기 통일118
V . 부가가치세법 ·······119
1.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119
2. 업무와 관련 있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121
3. 소멸시효중단·미수채권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122
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 124

	5. 여객운송용역의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125
	6.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126
	7.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선적시로 의제	·· 128
	8. 확정신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130
	9. 매입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하향 조정	·· 132
	10.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의 연장	·· 134
	11.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연장	·· 135
	12. 수정세금계산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 허용	·· 136
	1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 배제	·· 137
	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의 개선	·· 138
	15. 부가세 신고 시 단순 누락 매입세액 공제 항목 신설	·· 140
	16. 면세·영세율 적용 거래에 일반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경우	매 입
	세액공제 허용	·· 141
	17.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 142
	18. 기타외화획득용역 영세울 적용 업종 추가	·· 144
	19.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 145
	20.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요건 완화	·· 146
	21. 철광석·유연탄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147
	22.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한 단축	·· 149
	2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한 첨부서류 간소화	·· 151
	24. 산학협력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153
	25. 수입부가세 사후 정산 제도 도입	·· 154
	26. 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 156
	27.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별매품의 영수증 교부 허용	·· 158
V	I. 국세기본법	159
•		
	4 권과하고하취 전기	450
	1. 경정청구기한 연장	159

2.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61
3.	.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제도 완화	·· 162
4.	. 심사·심판청구의 최장 결정기간 설정	·· 164
5.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지연시 지연기간 가산세 전부 감면	·· 165
6.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및 수수료 폐지	·· 166
V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7
1.	. 특정외국법인 판단기준 및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선	·· 167
2.	.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범위' 추가	·· 169
3.	. 도매업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조건 완화	·· 170
4.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부담세율 산출방법 보완	·· 172
5.	. 자회사 적자시 손회사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납세액공제의 공제 허용 …	·· 173
VⅢ.	관세법	1 7 5
	관세법	
1.		·· 175
1. 2.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100% 면세 유지	·· 175 ·· 179
1. 2. 3.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100% 면세 유지 ···································	·· 175 ·· 179 ·· 180
1. 2. 3. 4.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100% 면세 유지 ···································	·· 175 ·· 179 ·· 180 ·· 181
1. 2. 3. 4. 5.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100% 면세 유지 ···································	·· 175 ·· 179 ·· 180 ·· 181 ·· 183

	2.	대규모 점포시설 관련 부설주차장의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186
	3.	지방세법 소액징수면제 대상 세액 상향조정187
	4.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기간 연장189
	5.	기부채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191
X		지방세특례제한법193
	1.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193
	2.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197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199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200
	5.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201
	6.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203
	7.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 신설204
	8.	법인지방소득세 이월세액공제 경과규정 마련205
	9.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조항 신설206
	10	. 법인지방소득세 연구개발 관련 공제·감면 조항 신설207
	11	. 법인지방소득세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공제·감면 조항 신설208
	12	. 법인지방소득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제·감면 조항 신설209
	13	.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210
	14	. 산업단지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건의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211
X	I.	지방세기본법 212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212

XII.	기타 법률2	216
1.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 일원화	· 216
2.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218
3.	'홈텍스'상 피합병법인의 내역 확인기능 추가	· 220

I. 법인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범위의 명확화

[현 행]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 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해 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문제점]

- 국외원천소득에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대상 이 되는 국외원천소득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예) 회계상 반영되지 않으나 세무상 이익으로 조정하는 간주배당, 지급보증수수 료 등과 같이 현금수취는 없으나 세무상 익금으로 보는 항목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방안]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명확화 또는 준용기준 마련 (예: 과세표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
기본통칙	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
57-0…1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을 말함	하여 계산하여 <u>과세표준에 포함된 모</u>
[국외원천		<u>든</u>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소득의		
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및 공제율 확대

[현 행]

○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자회사와 손회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100%를 공제하는데 반해, 손회사는 50%만을 공제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문제점]

- (업종 특성) 발전/에너지 업종의 지배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2단계 이상의 간접투자 가 일반적인 바, 손회사의 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해외 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2단계 이상의 간접투자는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요청 또는 컨소시엄형태의 투자 시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로서, 진화·발전하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다계 지배구조의 해외자회사인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단계 자회사까지 세액공 제를 허용하고 있음 (IRS Section § 901)
- 각 자회사간 소유지분은 10% 이상
- 내국법인의 간접 소유지분이 5% 이상
- 4단계 자회사부터 6단계 자회사까지는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것(실질 지배력)
- 6단계 자회사까지만 세액공제를 허용

[개선방안]

- **다단계 지배구조의 해외자회사인 경우**에도 지분요건 등 일정 요건의 충족 시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
- **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을 100% 공제**하도록 개선(<u>특정 산업으로 한정</u> 가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
	세액의 공제】	세액의 공제】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한다. (2008.2.22. 신설)	(2008.2.22. 신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	1. 해당 외국자회사가 <u>직접 또는 간접</u>
	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u>으로</u>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출자총액의 100분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1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간편화

[현 행]

○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 액공제의 계산시,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 액으로 계산하여 합산 및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 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해야 함

[문제점]

- (실무상 한계) 외국자회사의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에서 배당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회사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계산내역 자료를 수집 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실무상 어려움
 - 배당금 수령 후 해당 외국자회사의 **지분관계가 소멸되거나 청산**되는 사례도 있 어 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또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률에 따른 의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신고내역을 수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 **배당 결의년도** 또는 **직전 사업년도의 신고내역을 준용**하여 계산 간편화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시기 합리적 조정

[현 행]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문제점]

- (외국납부세액 결정시기와 공제시기간 차이 발생) 각 국가별 세무신고 및 납부기한 은 차년도 3월~9월로 국내 정기세무신고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이 미확정 상태임
 - 한국은 국외원천소득이 한국 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 되어있는 사업연도에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국 세법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으로 법인의 과세표준 산입시기와 외국납부세액의 결정시기간 차이 발생
- (불필요한 납세비용 발생) 국내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와 실제 외국정부에 원천소 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된 시점이 상이하여 기업이 별도의 경정청 구하여 추후에 공제를 받아야 해서 납세비용이 발생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실제 외국정부에 납부한 시점 또는 원천징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상이하더라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공제 적용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납세비용 줄여야함

[개선방안]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실제 외국정부에 납부한 시점 또는 원천징수된 시** 점을 기준으로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 통지의 지연, 과세기	법인세의 결정 • 통지의 지연, 과세기
	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시행령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
제94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	득에 대한 법인세 <u>결정통지를 받은</u>
	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
	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수정신고 기준 완화

[현 행]

○ 해외자회사의 과세기간(4.1~3.31)이 국내(1.1~12.31)와 상이한 경우 추정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한 이후에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이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야함

[문제점]

○ (국가별 과세기간 차이 반영) 해외진출이 증대되어 해외자회사가 많은 경우 진출 국가별 과세기간이 다른 자회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그때마다 수정신고 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경우처럼 납부세액의 **10% 미만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년도 신고금액에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 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③ 생략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	개 선 안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③ 생략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 (중략)…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 법인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제94조		
	⑤ 생략	⑤ 생략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현 행]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그 이 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문제점]

- (누적결손 법인 증가) 외국 자회사로부터 매년 배당금, 용역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해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특히 누적결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한 후 적용 가능하므로, 이월결손금 미사용 발생으로 공제기한 5년 내에 세액공제 사용 불가한 실정
- (형평성 제고) 기업의 이월결손금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이 '09년부터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되었으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 기업의 자본유지를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법인세법 개정('08.12.26)을 통하여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10년으로 연장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은 기업의 자본유지 및 계속기업 세원확 보 차원의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의 취지에 부합
- (계속기업 세원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유동성 증대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건설 용역의 수출 장려 효과"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대형 Project 위주의 발주", "설계, 구매, 공사 등의 전 공정을 동시 발주하는 EPC 위주의 사업" 등의 특징을 가지며, 동시에 건설공사 수행지국 과세당국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의 전체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한도 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외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은 5년 을 한도로 이월공제 가능함

[개선방안]

○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
제57조 개정	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	터 <u>10년</u>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
	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	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다. (2010. 12. 30 개정)	있다. (2010. 12. 30 개정)

직접사업목적의 채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시 대손금 손금인정

[현 행]

-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발생시 회수불가능한 경우에도 세법상 대손 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② 1)
- 다만,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손금 손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⑥)

[문제점]

-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 관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 의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택지 확보 및 시공을 병행하는 것은 시공간상의 제약이 많이 따름
-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은 시행자가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융통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채무보증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갖추게 됨.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공사는 대부분 시행사와 시공사의 도급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사의 재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시행사가 은행 등에서 <u>사업자금을 대출받 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채무보증이 반드시 필요</u>함
 - * 건설산업 구조상 사업시행사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규모이고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에게 지급보증을 요청함 (위와 같은 구조가 아니면 대부분의 건설사업 진행이 불가능함)
 -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로 아파트 분양 등 건축사업이 악화될 경우 금융권은 주 채무자인 시행자 대신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한 채무보증인이 시공자에 대위변 제를 요구하며 시공자는 금융제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위변제를 함
 - 그러나 채무보증을 섰던 시공자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해도 세법상 손금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 사업결과,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신 상환을 하고 시행사로부터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만,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는 불가능하고, 시행사는 파산이 됨
 - 시공사는 사업성이 악화되므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비 수금은 물론 관련 금융비용의 손실까지 모두 부담하게 됨

- * 이에 시공사는 남은 채권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여야 하나, 현행 법인세법상 손실 처리 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직접사업 손실 성격 인정) 건설사의 지급보증손실은 사실상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 성격이므로 손금이 인정되어야함
 - *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개발 관련 채무보증은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무관 보증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세법 제정취 지에 부합되지 아니함
- (건설사 부실화 예방) 건설사의 대위변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는 경우 건설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설사의 부도 등에 따른 금융기관 및 하도 급업체 등 관련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음
- (세목간 형평성 제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생채권 중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유사한 채무보 증」으로 인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세법상 대손금을 인정하고 있음
 - <u>건설회사의 주택사업은 금융 지급보증이 필수적</u>이고 이는 일반적인 <u>금융권에서</u> 행하는 채무보증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볼 사유가 없음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u>「금융・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u>가 <u>주된 사업에</u> <u>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u>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개선방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 공사 등을 목적으로 행한 채무보증시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 산입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⑥ 1~4 (생략)	⑥ 1~4 (생략)
법인세	5. (신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		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 공사 등을 목
시행령		적으로 행한 채무보증
제 19조		- 특수관계자(계열회사 등)간 채무보증은
의2 ⑥		업무무관 보증행위로서 재무구조 건
【대손		실화 등 당초 법 제정취지에 부합되
금의		도록 관련 채권의 손비를 인정하지
손금불		않아야 함. 따라서 채무보증에 따른
산입】		구상채권의 범위를 특수관계자간 발
		생된 채권으로 한정함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 허용

[현 행]

- 법인세법 19조의2① 1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은 손금 산입이 가능함
 - 시행령 19조의2⑥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손금산입가능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채무보증(예: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행하는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및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의미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
-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 국내 계열회사,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 현지금융기관과 관련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이 불가능(재법인126, 2004.02.19.)

[문제점]

- (해외투자시 필수적)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본투자 외에도 현지 법인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필수적
 - 예를 들어 중국 등 현지 법률상 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 운 경우에는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투자효과 의 극대화(레버리지효과 등)를 위해서도 적정규모의 차입금이 필요
- 신규 현지법인의 경우 그 신용도 및 인지도에 비추어 **모기업의 지급보증 없이는**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투자시 국내기업의 지급보증은 불가피
- (해외투자 위축 우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아 해외투자를 위축시키는 결 과가 발생될 수 있음

[개선방안]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손금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시행령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19조의 2	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대손금의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손금불신입]	1~4. 생략	1~4. 생략
		5.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
		접투자한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한 지급보증

적격분할시 주식보유 사후관리 규정의 주식 보유비율 현실화

[현 행]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남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47조 3항 2호, 동법 시행령 제84조 8항 2호)

[문제점]

- 분할신설법인이 증권시장 상장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미만으로 하락하게 되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이 일시에 환입되어 세부담 급증
 - 국내 725개 상장기업 평균 대주주지분율: 43%(KRX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1항 6호가 법인세법 제47조 3항을 취득세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외에 과거 감면받은 취득세까지 추징되 어 법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발생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자사주매각 또는 다른 주주의 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음(세정 13407-1405, 2000.12.7.외)
- 결국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절대적 소유가치(자산가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과세이연을 취소하는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분할사업부문의 전문화・대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기업구조조정을 저해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과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주권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30%로 보유비율 차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③ (생략)	③ (생략)
법인세법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제47조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으로 주식등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경우에는 100분의
		<u>30</u>)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물적분할후 추가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

[현 행]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13년 세법 개정시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법법 47 조 2항 단서조항)하였으나.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허용함(법령 84조 5항)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의 법 및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를 제한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어려움 발생

현행 시행령 문구(법령 84조 5항 각호)

-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3. 2. 15. 신설)
-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2013. 2. 15. 신설)

[개선방안]

○ 기업구조조정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합병, 분할이외에 **현물출자, 분할합병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안을 추가하여 당초 법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 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 로 인한 자신85차위 상당액의 소금신입)	현행 ⑤ 법 47조 제2항 각 호 회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013. 2. 15. 신설) 1~2. (생략)	⑤ 법 47조 제2항 각 호 회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산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013. 2. 15. 신설) (삭제)
		3.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 이 현물출자하는 경우(개정)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능 주식 범위 보완

[현 행]

- 2014년 3월 1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신설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포 괄승계와 관련된 요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
- 신설 규정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만 포괄승계 예외를 인정함

【문제점】

- (업종 특성 고려) 현행 규정에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아니함에 따라, 개 정 규정에 의할 경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영위 혹은 출자전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식 에 대하여는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개정은 분할되는 사업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포괄승계로 인정 하고자 하는 개정 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개정 규정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능 주식 범위 보완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1.	1.
시행규칙	2.	2.
제41조	<신 설>	2-1. 금융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전환등으로 인하여 보
		유하게 되는 주식
	3.	3.

외국법인간 적격요건을 만족한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현 행]

○ 합병등기일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 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과세 특례

[문제점]

- 국제시대의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세법은 내국법인의 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므로 해외자회사간의 합병은 적격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법인세 제16조 에 따라 의제 배당이 발생함
- 외국법인간의 적격합병도 과세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함

[개선방안]

○ 적격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법 인 세	하던 내국법인간 의 합병일 것	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법 제	(단서 신설)	<u>단</u> 법 16조를 적용시 외국법인간의 합병도
44조 2		적격요건을 만족한 경우도 과세특례를
항 1호		동일하게 적용함

특정인에 광고선전목적 기증 물품의 손비 한도 상향

[현 행]

- 광고선전목적 기증한 물품의 비용
 -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광고선전비
 - 특정인이게 지출하는 경우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광고선전비이며, 3만원 초과 하는 경우 전액 접대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문제점]

- (세목간 형평성 제고) 장기VIP고객(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물품 지급하는 경우 소 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5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음
- (주체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물품 지급시 고객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한 법인은 3만원 초과로 전액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내에 서 비용으로 인정 가능
 - 광고선전용 물품을 기증하는 하나의 행위로 지급하는 자와 수령하는 자에 대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한도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 으로 보임

[개선방안]

○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용 물품에 대해서 기존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 로 상향 건의

접대비 한도액 상향 조정

[현 행]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략)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문제점]

- 기업회계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기업이지출하는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접대행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있음
- (경영활동 위축 우려) 현재 접대비 한도가 지나치게 손금한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접대비 지출액 한도가 낮아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 *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일정 부분 접대비의 집행은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개선방안]

○ (1안) 접대비 한도액의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제25조(접 대비의	제25조(접대비의 손금산입) 1. 1천200만원(_중소기업1천800만원) 2. 100억원 이하 1만분5의 20	제25조(접대비의 손금산입)
소금불산입) 	4.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4. 500억원 초과 <u>17천만원 +</u> 5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u>1만분의 10</u>

○ (2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한도 인정을 기존 20%로 상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① (생략)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법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
제 25조	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금액의 <u>100분의 20에</u>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으로 한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 한도 상향 조정

[현 행]

- 2011년부터 특례기부금제도가 폐지되어 특례기부금 대상 기부금 대부분이 지정기 부금 대상으로 변경되었음
- 지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비하여 낮은 손금한도액만 인정
 - 2010년 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X 50%
 - 2011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X 10%

[문제점]

-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라 특례기부금 대상 대부분이 손금한도가 낮은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기부금 한도의 급감(55% → 10%)으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의지가 감소되고 있음
 - 개정전(간편계산) : 특례기부금 50% + 지정기부금 5%
 - 개정후(간편계산) : 지정기부금 10%

[개선방안]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2010년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에 근접하게 증가시 켜 기업이윤의 사회적환원 동참 여건 조성
 -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한도를 (기준소득금액 X 10%)에서 (기준소득금액 X 30%)로 상향조정
 -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변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변경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추가

[현 행]

○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지닌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으로 한정함

[문제점]

- 지정기부금 대상에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다누리콜센터는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기부금 공제시 차등이 발생
 - * 다누리콜센터는 '11년 6월 여성가족부와 포스코 후원으로 설립되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위한 생활정보제공과 고충상담, 통역(10개국어)및 법률상담서비스와 다문화지원센터 연결지원 등 제공하며, 결혼이주여성을 상담직원으로 채용하여 취업을 통한정착에도 기여

[개선방안]

○ 지정기부금 대상에 **여성가족부 설립·후원기관인 다누리콜센터 추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법	는 것을 말한다	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1.~3. 생략	1.~3 생략
제36조	4.	4.
	가 [~] 차생략	가 [~] 차생략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타. 「다누리콜센터」</u>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현 행]

○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문제점]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음
- 다양한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환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됨으로 소득금액의 10% 초과하는 기부금은 법인세 부담이 있음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취지와 사회적 환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필요 있음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기준 예외**대상으로 단 서조항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①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단서조항 신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개선

[현 행]

○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하지 않음(법인세법 제 27조 제1호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문제점]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기업의 비생산적인 자산의 보유 방지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기업자 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임
-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을 통한 각종 투기 우려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u>경기 침체로 인해 비업부용 부동산의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부</u>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함에 따른 비용문제와 토지관련 세제의 체계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본이득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제도는 과거 고도성장기 회사들이 기업고유의 생산 활동보다 비생산적인 활동인 부동산보유를 통한 지가차익을 추구하는 행태 규제 하려는 제도로 현상황과는 맞지 않는 과세제도
- (기업환경 변화 반영) 지방세법에서 경제 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 법인세법에서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것임
 - * 지방세법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련된 중과제도를 2000년말에 폐지,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 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규정 및 제112조의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규정 등이 삭제
- (주택경기 침체 보전) 주택법에서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 등의 미분양의 심각성을 인정, 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조택공금의 사업계획승인후 의무착공기간 을 연장(2년→3년)한 바, 법인세법에서도 주택경기 침체 보전을 위한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완화할 필요 있음
 - * **주택법 제16조 9항** 개정(2013년 4월 1일 부동산대책 법안 발표)

[개선방안]

- (1안)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폐지
- (2안)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규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생략)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중략) ②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생략)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중략) ② 삭제
법인세법 제28조 (지급 이자 손금 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1.~3. <중략> 4. (생략) 가. 제27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이하 생략)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1.~3. <중략> 4. (생략) <u>가. 삭제</u> (이하 생략)

송주법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제외

[현 행]

- 2014년 7월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라 함) 시행과 관련하여 송주법 제5조 주택매수청구 규정에 의거 송변전 주변지역 (전압 765kV 180 m, 345kV 60 m)주택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u>송주법 절차에 의해 동 주택을 취득해야 함</u> (관보 제 18192호, 2014.1.28.)
- 법인세법에서는 <u>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업무무관 자산으로</u> <u>분류</u>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u>관련되는 일체의 비용(</u>직접비용 및 가지급 금 인정이자 등)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제점]

- 원활한 전기사업을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주택은 현행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업시행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특히, 송주법에 의해 매입한 주택은 성격상 처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어 보유기간 상당한 세부담으로 작용

[개선방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부득이한 사유 추가
 - 송주법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⑤ (생략)	⑤ (생략)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신설)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30. 「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법률」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013.2.23.	
	개정)	31.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u>제2호부터</u>
		<u>제30호까지</u> 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013.2.23. 개정)

소액채권의 대손금 상향 조정

[현 행]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에 대해 세 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문제점]

- 현재 소액채권 대손기준금액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으로 되어있으나 세계경기불안 및 경기하락의 원인으로 하우스푸어 양산, 개인파산의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특히 통신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 등처럼 특정 거래처들과만 거래하는 것 이 아니라,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량의 소액채권이 계속적으로 발생함
 - * 통신서비스는 가족간 요금통합, 서비스간 결합화로 인하여 과거대비 1인당 채권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통신사업자의 경우 미납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전화, 서신, 문자전송, 채권추심 전 문업체 의뢰 및 소액재판 등의 여러 조취를 취하고 있음
-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 비용, 법무사 수수료 및 인지세·송달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을 합하면 약 5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함으로써 회수실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 발생

[개선방안]

○ 물가 상승, 고객별 평균채무액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대손이 허용되는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시행령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중략)	중 채권가액이 <u>50만원 이하(중략)</u>
제19조의 2		
제1항11호		

수익적지출 특례 기준의 금액 상향 조정

[현 행]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구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간주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제3항, 법인 46012-2660,1996.9.20.)

[문제점]

- 본 특례 기준의 취지는, 금액의 중요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출 성격과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적인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지 않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그러나 동 건은 1995년 신설 후 개정된 이력이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33조 2항, 1995.3.30 신설)
 - * 1995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GDP 2배 증가, 소비자물가 1.6배 상승

[개선방안]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익적지출 특례 기준 금액을 700만원으로 인상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액이 <u>700만원 미만인 경우</u>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액 추계시 산정방식 개선

[현 행]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함(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의 2)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문제점]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퇴직급여 에 대한 재원을 사내유보 또는 사외유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함임
- 과거에는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만 인정되었으나,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2010.12.31, 2012.2.2. 개정)
-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이 채택된 기업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확정급여채무)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함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은 할인율 등 가정이 다를 뿐 계산논리가 동일하며,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모든회사에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는 데 반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회사에 적합한 가정(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등)을 사용하므로 보다 합리적인 추계액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다른 상황에서, <u>「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u> 리기준을 초과하여 사외적립하는 경우, 퇴직급여 비용처리 금액이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초과하는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는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

-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추계액이 1)일시퇴직기준추계액과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보험수리적추계액 보다 클 경우 결산상 비용계상액 보다 손금인정한도가 적으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 예)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하여 신용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 K-IFRS에 따른 추계액이 「근퇴법」상 추계액보다 크므로 퇴직연금 등을 손금 한도까지 최대한 불입하여도 K-IFRS와 「근퇴법」상 추계액 차이만큼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퇴직재원의 사외적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기준 채택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을 추계액 기준 한도계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추계액도 세무상 인정하여 국제회게기준 도입기업의 불이 의 해소가능

[개선방안]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사용하는 추계액 기준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건의함(시행령 제60조 제 2항, 시행령 제44 조의2 제4항 제1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국제회계기준 채택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준 추계액(확정급여채무) 중 선택 가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④ 1의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④ 1의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국제회
시행령	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	계기준 채택기업은「근로자퇴직급여
┃ ┃ 제44조의 2	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티지버칭크	에 대한 부담금	금액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
(퇴직보험료 		리기준 추계액(확정급여채무) 중 선택
등의		<u>가능)</u> 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
		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
	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	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
	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	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
	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	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
	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
 제60조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국제회계기준
	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택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퇴직급여충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	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당금의	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기
 손금산입)		준 추계액(확정급여채무) 중 선택 가
		능)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종업원에 대한 사택보조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현 행]

- 법인세법에서는 사용인 등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 사택의 임대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사택의 범위는 법인세법에서는 **사택 및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 사택 또는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아닌 <u>사택보조금을 지</u> 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및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모두 포함됨

[문제점]

- 법인세법 상의 사택 관련 규정은 회사가 직접 소유(소득세법 준용 시) 또는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사택제공 부담 증가) 다양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적절한 주택 선정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 상승에 따른 자금 및 관리 부담 큼
- 회사가 사택의 직접 소유 및 임차에 갈음하여 사용인 등에게 <u>명확한 사용 목적과</u> <u>운용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사택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u>, 사택의 직접 소유 및 임차 후 제공하는 것과 <u>경제적 실질은 동일</u>하다고 판단되나,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모두 포함됨
 - * 법인이 '사택'(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포함하다)을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법령§ 88 ① 6호 나목)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택보조금 관련 회사가 해당 사택보조금의 용도 전용이 불가능하게 하고, 전출시 즉시 회수하는 등 목적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사택 제공과 동일하게 운영한 다면 직접 주택을 선정, 구입 후 보유 또는 임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후속**

심판례의 취지임(대법원 2004두7993, 2006. 5. 11 / 조심2008서3445, 2010.12.29 / 심사법인2004-7055, 2006.6.14.))

- 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 정상적인 거래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회사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임
- 따라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종업원 복지를 위한 종업원에 대한 사택보조금**을 경 조사비나 학자금 지원과 달리 <u>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u> 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안]

- 법인이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사택보조금을 대여하는 경 우**, 사택에 갈음하여 대여하는 자금의 성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여는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대상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① (생략) 1~5 (생략) 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신설	① (생략) 1~5 (생략) 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임직원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 및 임차자금 대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① (생략) 1~4 (생략)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 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 (생략) 1~4 (생략)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 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 임 직원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 택 취득 및 임차자금 대여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1~7. 생략 8. 신설	1~6. 생략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사용인에 대한 사택보조금(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함) 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에 대여한 금액

특수관계자 대여금 중 5년 초과분 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현 행]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음
-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문제점]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또는 저 이율의 금전대여 를 과세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과 회사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부 당히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그 기준이 되는 시가인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5년초과 대여금 등에 적용되는 시가인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는 규정도 상기와 같이 사회적 통념상 비정상적 거래로 부당히 조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다만, 특수관계자 대여금중 종업원(임원 및 주주제외) 대여금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재를 영입하면서 **복지의 일부로 대여**되는 것으로, <u>부당행위계산 부인</u> 의 입법취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조세경감 방지와도 거리가 있음
- 또한, 상기의 종업원 대여금의 경우 무주택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지원하는 주택융자, 원거리 근무 종업원에 대한 사택지원성격의 융자 등으로 기타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 지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 더불어, **상기 종업원 융자의 경우 성격상 대부분 그 융자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바, 현재의 규정으로는 법 취지와는 다르게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 따라서, 종업원 대여금의 경우 5년초과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회사 가중평균차입이 자율을 산정할 수 있는 한, 당 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인정이자 계상 시 시중 대여이자율과 무관한 당좌대월이자율(8.5%) 적용함

[개선방안]

- 5년초과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시가인 이자율 적용과 관련한 사항 보완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단, 이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대여금(임원, 주주제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산정 가능할 경우 그 이자율을 시가인 이자율로 본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3항 1-2	3항 1-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
시행령	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	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
제89조(시가	로 한다.	로 한다. (단, 이를 적용함에 있어
의 범위 등)		종업원 대여금(임원, 주주 제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산정 가능할
		경우 그 이자율을 시가인 이자율로
		<u>본다.)</u>

연결자법인의 배제후 연결 납세방식 적용 제한 폐지

[현 행]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및 제76조의9 2항에서 연결모법인의 완 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5년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못 함**

[문제점]

- 연결자법인이 연결대상에 배제된 이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지라도 총 5년간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연결납세를 적용받지 못 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는 개별법인 경영과 지주회사에 의한 기업집단으로 경영하는 경우 납세액에 차이가 없도록 하여 기업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경영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법인이 향후 5년간 연결납세를 곧바로 적용받지 못한다면,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회사가 연결납세를 선택한 취지에 맞지 않게 자유로운 경영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애초의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됨

[개선방안]

○ 제76조의 12에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었을 경우 제76의 9 2항을 적용받지 않도록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생략)	① (생략)
법인세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제76조의 12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제</u>
【연결자법	76조의 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76조의 9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의 배제]	규정 을 준용한다.(2011.12.31. 개정)	<u>규정</u> 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③ 생략

연결납세 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현 행]

- 현재 내국영리법인과 그 법인의 완전자회사(100% 지분소유관계)인 법인은 국세청 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결법인으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시 연결법인이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손실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양도손익의 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

[문제점]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 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서, 이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 법적으로 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기업이 독립된 기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그룹 이 단일기업과 같이 운영된다면, 개별 기업의 소득에 대해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 위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므로,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실질 과세원칙에 부합하고
-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은 여러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세부담 차이가 없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기업환경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기업그룹 내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조작하는 행위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도입 취지임
- 그러나, 연결법인 내의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연결납세제 도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경제적 실 체의 조직구조에 따라 조세 부담률이 달라져 결국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조세 중립성에 역행하며
- 경제적 실체에 과세한 소득에 대하여 다시 부당행위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 도 가지고 있음

[개선방안]

○ 동일 연결집단에 속한 연결법인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예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한다. <단서삭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개선

[현 행]

○ 법인주주가 국내 他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부분을 **익금에서 제외**

출자비율(상장법인)	익금불산입
50%(30%)이하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50%(30%)초과 ~ 100% 미만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50% 익금불산입
100%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100% 익금불산입

[문제점]

- (이중과세 문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징수한 후,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또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공제비율은 주요선진국들에 비하여 크게 낮음
 -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보유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수입배당금의 80%를 공제함
 - 일본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의 **80%를 공제**하고,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정주식은 100% 공제하고 있음
- 작은 지분율 차이에도 익금불산입율이 크게 달라지고, 비상장·상장 여부에 따라 조정비율이 차이가 발생하여 입법취지와 달리 중복과세 문제 발생

[개선방안]

○ (1안)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100%로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생략)	① (생략)
법인세법 제18조의 3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1. <u>(삭제)</u>
	자총액의 100분의 50	2. (삭제)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	
	하로 출자한	

○ (2안) 선진국 수준과 같이 지분율 50% 초과시 익금불산입율 80%를 적용하고, 지분

율 50% 이하의 경우 익금불산입율 50%를 적용토록 익금불산입율을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①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초과하여 출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초과하여 출
	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	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
	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입배당금액에 <u>100분의 80을</u> 곱하여
법인세법	산출한 금액.	산출한 금액.
제18조의 3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
	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 분의 30 을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u>100분의 50을</u>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곱하여 산출한 금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합리적 개선

[현 행]

- 배당을 지급받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법인세법 제18조의 2, 18조의 3, 제17조의 3)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차입금이자에 대한 차감액
-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인세법 제18조의2)

[문제점]

-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금액에 대한 일정율(30%~100%)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 금액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회사의 세후소득이 배당으로 모회사에 이전되고 이 과정에서 동일 소득원천에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는 논리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함
- 다만,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모회사의 차입금을 규제하고 있는바 차입금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이중과세 조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무차입 자본구조로는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적정한 부채비율로 운영되는 기업에게는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의 걸림돌인 차입금관련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이라 하더라도 배당지급 법인의 과세 후 이익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배당이 지급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 발생

[개선방안]

- 부채비율이 양호한 기업(부채비율 200% 이하)에게는 차입금관련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법인세법 제18조의 3 ①항 3호 단서 신설
-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 적용

구 분	현 행	개선안
	① 1.~2. (생략)	① 1.~2. (생략)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법인세법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
제18조의 3	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	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	산한 금액
	<단서 신설>	다만,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적용하지 아
		<u>니한다.</u>
	②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법인세법	1.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u>1. 삭제</u>
제 18조의2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변경

[현 행]

-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상 PFV포함)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도관(導管, conduit)의 성격이 강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한하여, 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 중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임

[문제점]

- <u>배당가능이익 산출 구조상 ①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비용, ②회계상 결손금,</u> ③이익준비금 설정액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현행기준으로는 배당 금액 만큼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이중과세 문제 조정의 한계점 발생
 - * 배당가능이익=회계상 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 도관의 성격이 강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한하여 배당가능이익을 90%이상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액이 아닌 세무상 과세표준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규정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법인세법	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은 해당 사	을 배당한 경우 <u>각 사업연도소득금</u>
제51조의2	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서 배당가능이익 대
		<u>비 배당률 만큼</u>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개선

[현 행]

- 유가증권(비상장 국내,해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요건완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감액손실로 기 인식한 유가증권의 신고조정 허용을 통해 투자 유가증권 손실 금액 손금인정 시기 완화

[문제점]

- 피투자회사의 회사 상태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유가증권 감액손실 **손금반영시기**는 손금인정 사유가 발생한 년도로 귀속시기가 한정 되어 있음
- 회사가 보유중인 피투자회사 경영 악화로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후 피투자회사 의 회사 상태 파악에 실무상 한계가 있음
 - 피투자회사의 경영악화 이후 실질적인 영업중단 상태가 많아 투자회사와 피투 자회사간의 관계지속이 불가하여 회사의 상태(청산여부 등) 파악에 한계 존재
 - * 영업중단상태에서 실제로 법인 등기 소멸로의 청산까지 수년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피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중단 상태 이후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의 관계 두절로 피투자회사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힘드므로, 유가증권 감액손실 반영시기는 손금인정 사유를 투자회사가 알게된 날의 해당사업년도에 손금반영할수있도록 변경하여 실제 투자 유가증권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 필요
 - * 투자손실의 실질적인 손금 인정으로 부당한 조세회피의 감소 여지 없음

[개선방안]

○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국내,해외)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요건 개선 요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 4 2 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 •	(2010.12.30. 개정)	(2010.12.30. 개정) 또한, ③항 3호,4호의
부채의 평		경우 <u>손금 귀속시기</u> 는 3,4호에 해당되는
가】		사항이 발생된 것을 투자회사가 <u>인지하</u>
		<u>게된 사업년도</u> 로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류 보관 의무 기간 축소

[현 행]

○ 법인세법 제116조의 1항에 의거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함

[문제점]

- 전자적 신고/납부로 신고 후 2년이내 경정 및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정청구기 한 3년)
- 추징에 대한 소명 및 경정청구에 연말정산 원시자료를 제출
- 증빙 보관을 위해 여유 공간 필요 및 유지비 발생

[개선방안]

○ 법인이 전사적 자원관리에 의해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공제별 항목별 상세 내용을 보관시 증빙 보관 의무를 축소 (5년 → 3년)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
법인세법	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	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
제116조	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	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
【지출증명서류	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의 수취 및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연말정산 신고 서류는 3년에
		<u>준한다).</u>

지급조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하향 조정

[현 행]

-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법인세법 제76조 7항)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법인 세법 제76조 9항의 2)

[문제점]

- 국세청 과세자료 수집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세징수협력비용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2의 1 항에서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다한 가산세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0조 3의 3항)의 경우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나 누락에 의한 착오기재사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는 것에 비해, 계산 서합계표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가산세 면제나 경감 규정 없음

[개선방안]

○ 지급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율을 1천분의 1로 인하하고 지연제출시 가산세 경감 및 거래사실이 확인될 시 가산세 면제 조항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 (중략) 불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 (중략)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법인세법	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u>100분의 2에</u>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u>1,000분의 1에</u>
제76조①	상당하는 금액(중략)	상당하는 금액(중략)
		다만, 지급조서 제출기한 경과 후 6월이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
		<u>50을 경감한다.</u>
	⑨ (생략)	⑨ (생략)
	2. (단서신설)	2(중략)…
버이네버		다만, 매출 •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기
법인세법		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제76조		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기
9.2		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경과 대손 인정

[현 행]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손금산입

[문제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사가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손금조 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은 이후 손금인정이 불 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임
-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한 대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 도 손금으로 계상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건의함
 - o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선방안]

○ 소멸시효 경과된 채권에 대해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발생한 이후 회사가 손 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으로 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 인 세 법 시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행 령 19조의 2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u>또는 발생한 이후 회사가 손금으로</u> 계상한 날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거래 규정 보완

[현 행]

- 법인세법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피투자법인과 국조법 제2조 제1항 8호에 따른 특수관계 가 존재할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대상 **거래의 범위**는 <u>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u> <u>가·감액, 부채의 인식·평가·상환,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거래</u>로서,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또는 5년 누적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재고자산의 매입·판매, 고정자산의 감 가상각비 등)에 대해서는 손실거래명세서의 작성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 포함

[문제점]

- 손실거래명세서의 제출 규정 신설의 취지는, 최근 법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에 따른 것임
- 다만, 모든 거래의 손실에 대해 관련 내역을 전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거래명세서의 작성 대상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의 범주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의 거래도 정 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종이므로, **추가로 예외규정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정상적 감모손실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외환차손
- **재고자산**의 경우, 기업의 <u>영업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u>으로서 K-IFRS에서도 <u>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정상적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u> 필연적 결과물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더불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대금의 수취 및 지급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환

율'이라는 <u>외생 변수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물</u>로서, <u>기업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u> 뿐만 아니라, <u>동일한 외생 변수인 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환산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u>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기 2가지의 손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대상의 예외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개선방안]

- 해외현지법인 관련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대상 거래의 예외 범주 내용 추가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정상적 감모손실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외환차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	②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
	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	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
	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
	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
	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	1.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
	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제164조의 2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해 외 현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
지 법 인 에	• 판매로 인한 손실	• 판매· 평가손실·정상적 감모 로 인
대한 자료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	한 손실
의 제출]	의 감가상각비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의 감가상각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처분·평가·감액으로 인한 손실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한 평가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
	, '	인세는 제외한다) 인식 • 평가 • 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
	손실은 제외한다.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u>대가의 지</u>
	3.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	
	래로 인한 손실 	3.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
		래로 인한 손실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 작성 합리화

[현 행]

- 내국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함께 제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u>지배주주 등 **외의 주주**에 해당하면 제출의무 면제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u>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u>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 주식을 제출의무 면제주주</u>소계란에 일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u>코넥스 상장 법인은 주권상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u> 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과 같이 주식의 거래가 빈 번함에도 불구하고 <u>제출의무 면제주주의 범위가 법 규정상 매우 제한적(소액주주</u> 등만 제외)으로 되어 있어, 실무상 동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큼
- 또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 작성 합리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	1. 주권상장법인 (코넥스 상장법인
법인세법	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	<u>포함)</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119조	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
	소유하는 주식등	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
		식등
	2.	2.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현 행]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및 법인세 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 한 국고보조금 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 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문제점]

- 국고보조금 등 이라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의 자산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권장 및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에게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임을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보다 확대 적 용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함은 사업용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범위 확대와 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추 가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국책연구과제 보조금 수령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포함시켜 동 법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①~⑤ (생략) ⑥ 1~6. (생략)	①~⑤ (생략) ⑥ 1~6. (생략)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8. 「에너지법」

K- IFRS 도입에 따른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비용배분 제외

[현 행]

- 기업에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u>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상 내용연수 증가</u>로 <u>세무상 감가상각범위에 미달하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u>함 (법인 세법 제23조)
-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비용배분 의 원칙]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으로 비용배분을 하여야 함

[문제점]

- 신고조정 손금을 <u>매출원가와 재고자산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u>이 있으며, 매년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배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u>세무조정업</u>무 부담이 큼
 - * (예) 표준원가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손금 산입 가능한 감가상각비를 산출 후 기본통칙 4-0…3 에 따라 이를 자산별로 각각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해당 금액을 구한 뒤 향후 관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실정임. 또한, 판매와 생산이 연도별로 일정한 경우 안분 계산한 최초 연도 이후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개선방안]

○ K-IFRS도입에 따라 신고조정 가능한 감가상각비는 비용배분 대상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생략-	①-생략-
	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법인세법	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	각호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부
기본통칙	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3	1~3생략-	1~3생략-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특허권 내용연수 기간 축소

[현 행]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특허권의 경우, 어업권 등과 함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고 있음

[문제점]

- 현행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이나, 대부분의 특허권은 그 <u>실효기간이 짧고, 유지</u> 비용의 문제로 짧은 기간 안에 권리포기(당사 평균 5.4년)되고 있으며, 소수의 특 허권만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연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u>산업재산권의 일종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모두 내용연수 5</u> 년을 적용하고 있어 내용연수 분류에 모순이 있음

[개선방안]

○ 실질적인 사용기간을 반영한 내용연수 축소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특허권 내용연수: 10년	특허권 내용연수: <u>5년</u>
시행규칙		
별 표3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 개선

[현 행]

- 법인이 발생시킨 비용 중에서 적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지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26조)
- 아래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1) 공동출자로 특정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동경비
 -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 (2)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경비
 -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함
 - 1)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1)가 있는 경우

<u>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u>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의 손비에 대해서는 참석인원·구매금액 등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허용

- * 매출액 기준 : 분담해야 할 비용에 적용 할 매출액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 2)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약정비율이 없을 시 1)을 준용)

[문제점]

- 현행 규정은 공동 경비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배부기준을 매출액 또는 인원수 등 몇 가지 요소로 제한함으로써 분담 구조를 단순화함
 - 공동경비가 발생하는데에는 면적기준, 순이익기준, 부담능력기준, 사용량기준 등의 다양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배부기준은 매출액과 인원수 등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¹⁾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예시: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법규법인2012-282, 2012.7.30) 그룹웨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접속 이용자수, PC대수 또는 각 법인별 데이터 사용량 등 시스템 사용과 인과관계가 깊은 분담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분담경비를 나누게 될 경우 매출액이 큰 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비용을 부담 하게 됨

○ 분담액의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분담기준 왜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기업별 통일을 기하고자 분담액의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업태 업종별 상이한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 차이에 따른 매출액 분담을 왜곡하게 되어 오히려 임의 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한입법의 취지를 저해함

〈예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백화점의 경우에는 특정매입거래방식의 상품매입이 대부분인 반면에 대형할인점의 경우 직매입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u>두 업종간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의 차이가 있음</u>특정매입거래형태의 백화점은 상품 총매출액이 아닌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품 총매출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대형할인점과 매출액기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이럴 경우에 <u>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u>분담하는 공동경비는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법인에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공동경비 분담비율 매출액 제한으로 인해 사적자치의 원칙인 자유계약의 원칙 침해

- 특수관계자간의 공동경비에 대해서는 매출액으로 비용분담을 규정하는 것에 반해 특수관계가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약정비율 인정
- 이는 계약의 가격이나 조건이 불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u>국가가 간섭</u> <u>하지 말아야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인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배</u>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여 과세소득금액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이나 <u>사적자치원칙에 따라사인간에 이루어진 법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자간의 분담금액을 초과한 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서만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음</u>
- 그러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분담경비는 약정된 분배비율을 인정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의 거래에는 분담비율에 대한 계약을 매출액으로 밖에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면서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개선방안]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u>특수관계가 성립하는 비출자공동사</u> 업간의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u>매출액뿐만 아</u> 니라 '매출총이익 또는 총자산이나 총자본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항 … (생략)	①항 …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 경비의 손금불	①항 … (생략) 2호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항 … (생략) 2호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자산의 총합계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 가본의 총합계액 중 법인이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산입】	다만 … (이하생략)	선택한 매출액 총액, 매출총이익, 자산의 총합계액 또는 자본의 총합계액은 선택한 사업 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동안 적용하여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 매출총이익, 자산의 총합계액 또는 자본의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하생략)

Ⅱ.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 행]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인원 증가와 연동하여 투자금액대비 일정 공제율 을 적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문제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조특법 제26조)
- 당해 세액공제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부터 고려 시 1968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이며 조특법상 여러 세액공제 제도 중 기업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서 일몰 종료시 많은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여부는 경기회복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함
 -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미국·중국 등 경제 대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15년도 이후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시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 설비 투자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효과를 떨어뜨려 현정부가 강력히 추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 존재

[개선방안]

○ 기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3
 년 연장(일몰기한 연장: 2014.12.31 → 2017.12.31.)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① 내국인이 <u>2017년 12월 31</u> 일까지 대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생략)	통령령으로 정하는(생략)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현 행]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 도로 '14년까지 투자한 분에 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생산성향상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4년말 일몰 예정

[문제점]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높은 인적자본의 확충과 효율이 좋은 설비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이 가장 중요
-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성장의 기반으로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경 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과제임
- 투자세액공제 축소시 투자에 대한 어려움 가중 우려
 - 통신사업과 같은 정체산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자여력 및 고용증가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몰시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 발생
 - 생산성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 큼
 - * 통신사업의 500억원 투자시 475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94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음 (자료: 201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지속적인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한다는 차 원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되어야 함

[개선방안]

○ 투자촉진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 네트게 테쉬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	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는 시설에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제24조	투자(생략)	투자(생략)

각종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현 행]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서는 각종 구조조정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분으로 한시적으로 규정

[문제점]

- 국제 경제의 지속적인 어려움 하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 되는 기업 구조조정 거래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
-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화 하거나, 혹은 적어도 3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구조조 정을 지원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안]

○ 취득세 면제 일몰 규정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① <일몰 규정 삭제>
	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	
	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생	② <일몰 규정 삭제>
	략)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생략)	
 조특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③ <u><일몰 규정 삭제></u>
제 120조	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1120-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④ <u><일몰 규정 삭제></u>
	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생략)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	
	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⑤ < <u><일몰 규정 삭제></u>
	(생략)	
	⑥ <u>2014년 12월 31일까지</u> (생략)	⑥ <u><일몰 규정 삭제></u>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현 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기자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등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 현행 세법 규정상에서는 상기 제도가 2014.12.31일자로 일몰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기한 연장이 없을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게 됨

[문제점]

- 상기 제도의 취지는 농민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 및 임업종사자 들의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의 확 산과 외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축산, 임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임
- 국내의 농, 축산, 임업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관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농, 축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제5호 및 제6호는 <u>2017년 12월</u>
제105조 제1항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제5호	적용한다.	<u>적용한다.</u>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현 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 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정부는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고효율·친환경적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감면

[문제점]

- 현재 전기자동차는 제품수명주기상 도입단계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0.1% 수준 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이 도래됨에 따라 실질적인 감면 효과 미미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감면기간(2009년 7월 1일~2015년 12월 31일, 5년 6개월)과 비교**하여서도 전기자동차의 감면기간(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3년)은 **너무 짧음**
-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대비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등의 기술적인 부분 및 충전 인푸라 부족 등의 이유로 판매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도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축진에 역행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⑥ 제4항은 <u>2012년 1월 1일부터</u>
조특법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
제 109조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
	에만 적용한다.	에만 적용한다.

국내외 조림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현 행]

○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부담국은 아니나, 2015 년부터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문제점]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탄 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
- 국제적으로 통상무기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 **미래 국가경제력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세제혜택이 없음
-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은 조특법 제25조의 3에 규정한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와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10%의 세액공제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개선방안]

○ 국내외 조림사업 투자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신설>	① 내국법인이 탄소배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국자회사(내국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탄소배출권을 취득하는 국내외 조림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 2.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 다만, 외국자회사가 제1호의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하는 경우로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탄소배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현 행]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인원 증가와 연동, 투자금액대비 일정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14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전년 대비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음(중소기업은 인원 감소분에 대한 Penalty를 부담하되,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문제점]

-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입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는 설비투자 이후 고용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됨
- 즉, **투자와 고용의 시차**가 있는 바 이를 무시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 지 못하는 것은 동 제도로 인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감소하였더라도 일정부분 설비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함

[개선방안]

○ 일반·중소기업 모두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대기업 2천만원)씩 기본공제금액 차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생략)	① (생략)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과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선과세연	수가 직선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조특법	도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
제26조	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	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
	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원 <u>(일반기업 2천만원)</u> 씩 뺀금액으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	로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로 한다.	는 영으로 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지역 확대

[현 행]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므로 대상 확대를 통해 투자 활성화 유도 필요

[개선방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공업지역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포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제26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 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중 략) 1. (생략)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 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 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 우(생략)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 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u>다만, 수도권과</u> 밀억제권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 역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 략) 1. (생략)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같은 항제2호의 성장관리권 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 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 우(생략)
조특령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② 법 제26조 제1항 및 제130조
제 124조	(생략)	제1항 단서에서(생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
 -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
- ⑥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⑨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문제점]

- 2년내 근로자 고용이 감소할 시 공제받은 세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주화 (Outsourcing)에 의한 근로자 수 감소는 산업 전체의 고용 감소와는 무관하므로 근로자 수 산정시 감소인원에서 제외 필요
- 근로자 수 산정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증감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의 조기퇴직 등 기업의 고용 의사와 무관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소수점 이 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비교함

[개선방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서 외주화 인원을 감소인원에서 제 외하고, 근로자 수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⑥(생략)	⑥(생략) 단, 외주화 인원은 상시
조특법 제26조		근로자 감소인원에서 제외하여 산
		<u>정함</u>
조특법시행령	⑨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	9 상시근로자 수 중 소수점 이
제23조 제9항	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u>하자리는 올림한다.</u>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 완료기준 공제 적용

[현 행]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적용 시기 제한

[문제점]

- (과도한 납세비용) 1년 이상 소요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직접비 기준으로 간접비를 안분하므로 자산 대체시점에 투자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세액공제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가 지난 투자완료 시 점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확정함
- (투자공제 항목간 형평성 제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u>중소기업 투자 세액공</u> 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투자 완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진행율 혹은 현금지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
- 반면,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존시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투자완료 기준인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진행 기준임: 조특법 제11조 준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①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완료기준 적용 배제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당시 공제 세율이 빈번하게 개정 되면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법적용에 대한 혼란 및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달리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는 개념 및 공 제 세액 산정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세액공제율도 안정되어 향후 이러 한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납세자의 편의 및 타 투자세액 공제와의 적용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 (납세자 편의 고려) 진행률 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률 적용 안 하고 투자 완료 시기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당국과 진행률의 판단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감소

[개선방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완료 기준으로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	
	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조특법 제26조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오득립 제20오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
		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
		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
		<u>받을 수 있다.</u>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1인당 공제세액 상향 조정

[현 행]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인원 증가와 연동하여 투자금액대비 일정 공제율 을 적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문제점]

- 고용 1인당 계산금액이 과소하여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실상 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
- 기업의 고용 확대/유지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고용창출을 진작하기 위해서도 고 용 1인당 한도 계산금액 확대 필요

[개선방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1인당 공제세액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1. 기본공제금액 :	1. 기본공제금액 :
	가. (전략) 성장관리권역 또는	가. (전략)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1%	내에 투자하는 경우 1%
	나. 수도권밖의 지역에 투자	나. 수도권밖의 지역에 투자
 조 특 법	하는 경우 2% (중략)	하는 경우 2% (중략)
	2.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3%	2.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3%
│제26조 │	가. (중략) 직업교육훈련을	가. (중략) 직업교육훈련을
1항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수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수
	X 2천만원	X <u>4천만원</u>
	나. (중략) 청년근로자수 X	나. (중략) 청년근로자수 X
	1천500만원	<u> 3천만원</u>
	다. (중략) 1천만원 (하략)	다. (중략) <u>2천만원</u> (하략)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현 행]

-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현장내 재해 발생가능성을 예방하도록 촉진 ('14년末 일몰)
 - (공제) 투자금액의 100분의 3(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중소기업 100분의 7)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범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

[문제점]

- ①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OECD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 **률이 가장 높아** 산업재해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3년 기준 1,929명에 달하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의 비율은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
-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09)1,916명 → ('10)1,931명 → ('11)1,860명 → ('12)1,864명 → ('13)1,929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13년 기준)

구 분	일 본	독 일	미국	영 국	OECD 평균	한 국
상해 사망자	クタ	2.04	1	0.7	3.7	9.9
비율(%)	2.0	2.04	4	0.7	5.7	9.9

* 상해 사망자 비율: 연간 근로자수 100,000명당 발생하는 '상해 사망자 비율'

(자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외국의 사망재해 조사, '13.10)

- 2 안전에 대한 낮은 국가재정예산 및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지원액
- 국가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4%**로 낮은 수준
-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은 6%** 수준
- * 재난관리 투자계획: ('13)9,840억 → ('14)9,440억 → ('15)8,610억 → ('16)7,830억

(자료: '13 ~ '1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안전분야 투자계획)

	사회복지 ·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 및 에너지	공공질서 · 인전	전 체
총 재정지출	117조	24조	27조	16조	371조
비중	30%	6%	7%	4%	100%

(자료: 2014 조세지출예산서)

○ 또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인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비중은 0.2%**로 가장 낮은 수준

	고 용	에너지	R&D	생산성	환 경	중소기업	의약품	안 전	합 계
금 액	2조	2,814억	1,552억	619억	370억	133억	62억	46억	2조6천억
비중	79%	11%	6%	2%	1%	0.5%	0.2%	0.2%	100%

③ 기업들의 낮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은 0.5%로 전체 투자세액공제 평균 활용률인 3.8%에 비해 현저히 낮아.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기능 저하 우려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일부 업종 지원책인 의약품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다음으로 활용률이 낮아, 공제 대상 확대 통해 활용률 높일 필요 있음
- * 공제 활용률: 당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업수 / 전체 세액공제 적용 기업수
- * '12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208개 기업, 46억 원

	고 용	에너지	R&D	생산성	환 경	중 소	의약품	안전설비
적용기업	9469	348	1,465	470	220	901	39	208
전체기업	43,709	43,709	43,709	43,709	43,709	34,666	43,709	43,709
활용률	21.7%	0.8%	3.4%	1.1%	0.5%	2.6%	0.1%	0.5%

(자료: 2013 국세통계연보)

- 600대 기업 조사(212개사 응답)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60.4%가 안전설비 투자에** 도 불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받은 경험 유무**(전경련, '14.5): 있다(39.6%), <u>없다(60.4%)</u>

[개선방안]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①일몰 연장, ②대상 확대, ③공제율 상향 조정
 - ① (일몰 연장)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 제 제도를 '17.12.31까지 연장 (3년 연장)
 - ② (대상 확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1) 시설·장비 범위 확대: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소방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1)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u>화학물질 취</u> 급시설(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시설·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 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제조소 등으로 분류되는 공장의 <u>자체소방대 설치</u> 통해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 (2) 노후시설 개·보수
 - ③ (공제율 상향)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현행 3%(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중소기업 7%)를 **7%로 일괄 확대**
- 안전경영 관련 ①사고 전담기관 설치·확대. ②안전 교육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① (**사고 전담기관 설치·확대**) 기업내 사고 전담조직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사업 비용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세제지원
 - ② (안전 교육)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및 직원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한 안전 교육을 위한 비용 세제지원

이월세액공제 공제기한 연장

[현 행]

- 현행 세법상 세액 공제의 경우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 (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
- 현행 세법상 법인 결손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 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 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해 줌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문제점】

- 결손금 이월공제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다음 사업연도의 순자산 증가와 상쇄하여 법인의 순자산 증감효과를 반영해 주기 위함이며, 세액공제 이월공제는 특정 목적의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써, 결 손금과 세액공제 이월공제의 목적이 법인의 세감면 효과라는 측면에서 동일
- 투자세액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수익변동성이 큰 산업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음(실제 공제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는 현상 발생)
 - * (예) 수익성 있는 시기에 대규모 투자 \rightarrow 이익의 증가로 최저한세 적용되어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 \rightarrow 수년 후 수익성 악화 \rightarrow 이월공제기한 경과로 공제 받지 못함
- 법인의 계속적 측면에서 보면, 결손금 이월공제는 10년인데 반하여 세액공제 기한 이 5년으로 제한되어 법인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5년) 이후 투자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효과를 받지 못함에 따라, 법인의 투자 축소 및 법인 입장에서 세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 특히 누적결손 법인인 경우 세액공제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한 후에야 공제 가능하여, 공제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미사용으로 공제 혜택 불가

[개선방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 역시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①(생략)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①(생략) <u>10년 이내</u> 에 끝나는 각
제 144조	과세연도에 이월(생략)	과세연도에 이월(생략)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 】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에서 "인건비"를 다음과 같 이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제점]

-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바, 법인은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여 노무비라는 계정으로 비용을 계상하고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지급의 시기가 퇴직시점으로 이월되는 비용일뿐 **근무용역** 이 제공되는 때에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음

[개선방안]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인건비의 범주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통칙 9-8…1	① ···(생략) 1."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① ···(생략) 1."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 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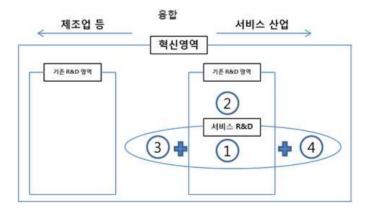
R&D 세제지원항목에 위탁분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포함

[현 행]

-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자체개발분만 조특법상 혜택을 적용
- 외주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국내외의 연구기관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

[문제점]

- 기존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한정되었으나, 서비스산업 발전 및 R&D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2월 개정시 서비 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를 추가 포함함
- 그러나,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위탁분을 배제**하여 <u>기존의 조특</u> 법상 연구·인력개발비와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며, 세제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또한,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u>지식경</u> 제부가 발표한 연구자료(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2010.3.16)를 참고할 때 오히려 조세혜택이 감소할 수 있음
- 즉, 하기 자료에서 ①은 기존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던 비용으로 위탁분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이 적용되던 영역이나,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시 위탁분의 조세혜택이 배제되어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① 영역: 새로운 서비스 상품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ex. 홈뱅킹 S/W 개발)
- ② 영역: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장비 개발 (ex.통신장비)
- ③ 영역: 제품의 서비스화 등 (ex. i-Pod(제품) + i-Tune(서비스))
- ④ 영역: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ex. 옥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 또한 외주위탁 R&D비용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한 위탁비용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R&D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조세혜택 실익이 크지 않음

[개선방안]

- 조특법상 혜택을 적용받는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자체개발 및 위탁** 분을 모두 포함
- **외주위탁** R&D비용의 경우 연구소(전담부서포함)에서 직접 수행했는지 여부를 불 문하고 **연구소 인증을 받은 회사에 위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제9조	②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생략)	②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u>삭제</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생략)
조특법 시행령 별표6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마)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 서등을 보유한 기업

R&D 위탁·재위탁시 세액공제 적용 위한 증빙 종류 입법화

[현 행]

○ 국내외 기업의 연구전담부서 등에 위탁, 재위탁 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됨

[문제점]

- 실무상 위탁 및 재위탁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수탁 회사의 연구전 담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을 약정하고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위탁을 하는 회사 의 입장에서는 수탁회사의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는지 현실적으로 감독 및 감사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탁회사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회사로서는 재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인지 **실무상 확증이 어려움**
- 현재 위탁 및 재위탁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작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기업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및 증빙을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을 세액공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 기업이 실무상 위탁 및 재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및 증빙의 종류를 입법화 요청
 - 예) 위탁 연구개발비 계약시 "전담부서 수행 확인서" 및 "산기협 가입증명 서", "재위탁시 전담부서 수행 확인서" 등으로써 "직접수행한 부분 "의 증 빙으로 갈음

R&D세액공제 및 R&D투자세액공제의 최저한세적용 배제

[현 행]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

[문제점]

- 국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음
 - * 기업 연구개발 투자액: '08년: 26조 → '09년: 28조 → '10년: 32조 → '11년: 38조 → '12년: 44조
 - * '12년 연구개발비 구성(%): 기업 78%, 공공(국공립) 13%, 대학 10% (자료: 과학기술통계)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유인의 효과가 있어 기업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
 - * 조세지원액 1% 증가시 추가 연구개발 투자 0.46% 유발 (손원익, '06)
 - *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 6,000명 일자리 창출 (하준경, '12)
-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회사에게 생존을 위 한 필수이므로 국가에서 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이나 최저한세 대상에 해당하여 이 월되는 세액공제만큼 공제효과가 재투자되는데 시차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야함

[개선방안]

○ 연구인력개발비 및 연구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비대상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생략)	① (생략)
조특법	3 (생략)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3 (생략) <u><삭제>,</u> (생략)
제 132조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생략)	

최저한세 과세표준 계산시 R&D준비금 차감조정

[현 행]

○ 법인세법 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과세표준 계산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은 가산하고, 해당 준비금이 향후 익금산입 조정되는 금액은 최저한세 과제표준 계산시 차감해주고 있지 않음

[문제점]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는 미래에 사용할 연구비상당액에 대하여 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미리 손금산입 해주고, 향후 기한내에 연구비가 지출된 경우 해당 준비금을 3년간 균등환입함으로써 익금산입해주는 제도로써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과세이연효과(이자효과) 뿐임
- 최저한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에도 당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의 개념(과 세이연효과)에 따라, 당초 준비금설정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향후 해당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최저한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조정 해주는 것이 타당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적용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에는 그 효과가 과세이연효과 뿐임에도, 현행 최저한세 과세표준계산시에는 익금산입액을 차감조 정해주지 않고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최저한세 과세표준계산시 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은 차감조정하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 1호 및 2호에 따른 손금산입	~ 1호 및 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
조특법	우의 과세표준 (제1호에 따른 준비	우의 과세표준 <u>(삭제,</u> 이하 이조에
제132조 ①항	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 에 ~
	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 이하 이조	
	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 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확대

[현 행]

○ 기업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특정 법률에 따라 연구출연금 등을 받아 구분 경 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문제점]

- 연구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급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은 수년에 걸쳐서 사용되나 법인세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아직 사용하지 못 한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하여 과세, 연구개발지원의 효과 상쇄되는 문제 해소
- 현재 특정 법률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설 및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등은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법 제정 당시인 2006년도에 비해 현재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어 연구출연금의 규모가 커지고,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률의 범위가 협소함. 따라서 관련 법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특정 법률을 추가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 * (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등

[개선방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영 제9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	영 제9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
T E H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특법	법률을 말한다.	법률을 말한다.
시행규칙	1. ~3.생략	1. ~3. 생략
제7조의3	<신설>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u>법률</u>
		5.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내국법인으로 확대

[현 행]

○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 및 취득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문제점]

-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취득하는 노하우나 신기술을 보호 하는 목적으로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출원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대기업에 경우 국내외에서 특허 등록 및 출원에 제반 비용 증가추세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 특례에 의하며, 중소기업이나 내국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	① <u>내국기업이</u> <u>특허권, 실용신안권</u>
	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	<u>등</u> (생략)다.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u>술</u> (생략)	② <u>내국기업</u> 이 특허권등을 설정등
E		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
조특법	② <u>중소기업</u> 이 특허권등을 설정등	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
제 12조	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	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한다)한 경우(생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생략)	

에너지절약시설 녹색성장 관련 범위 확대

[현 행]

- 화석연료에 과도한 의존은 고유가의 자원위기와 기후변화의 환경위기를 동시에 초래 하고 향후 석유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화석연료의존에서 시급히 탈피할 필요가 있는 바 최근 녹색성장 투자에 관심이 급증
- 에너지·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Post교토체제 진 전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
- 탄소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재료 · 소재 등 녹색시장(Green Ocean)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
 - *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 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 * 지식경제부는 ① 견실한 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자원 사용최소화, ② CO2 배출 등 환경 부하를 최소화, ③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등 「3대 녹색성장전략」을 중점 추진

[문제점]

- 최근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발전전략 도입이 시급한 바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세제지원 절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에 열거하고 있는 설비의 종류를 확대하여 폭넓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

[개선방안]

○ 녹색성장 관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범위 확대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①의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기획재정부령에 연료전지 제조시설에 대한 사항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문제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1의 마 항에는 연료전 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의 별표8의4에는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수력 설비만 규정되어 있고 연료전지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 동 법의 취지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시설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연료전지가 발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나, 발전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연료 전지는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
-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는 국내제작이 가능해 짐에 따라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수력 설비만을 세액공제 대상설비로 규정하는 경우 연료전지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 하는 결과 초래
- 연료전지는 용도에 따라 휴대용,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나뉘며, 통상 발전용 연료전지는 250kw급 이상의 연료전지를 말함

[개선방안]

○ **발전용 연료전지의 생산설비**에 대하여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위한 시설에 추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1~4.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1~4. (생략) 5. 발전용 연료전지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단축 또는 이원화)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투자공제제도는 세액공제후 사후관리요건 미충족시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사후관리요건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문제점】

-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간인 2년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음
-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또한 상시적 구조 조정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설비 투자 자체로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중고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투자한 기업이 2년 내 자산을 처분해도 그 자산을 다시 취득한 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행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합리성이 떨어짐

[개선방안]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요건 단축개선(2년 →1년)** 또는, 기준내용연 수를 기준으로 사후관리요건 이원화
 - * 기준내용연수 10년이하자산 : 1년으로 단축
 - * 기준내용연수 10년초과자산 : 2년으로 유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현 행]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야 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됨 (10% → 3%)

[문제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해야 하는 이전공공기간은 본사 신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나, '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10% → 3%)로 이전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발생함.
- 아울러 동 세법개정으로 각 기관들의 이전시기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므로 기 관별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됨.
- 따라서 이전기관들의 신사옥 본사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세율 (10%)을 유지함으로써 이전비용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개선방안]

○ 본사이전 신축투자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10%)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특법 제11조 제1항	①(생략)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생략)	①(생략)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 및 <u>법 62조를 적용받는 기업인 경우(본점 및 주사무소에 한함)</u> 에는 100분의 10] (생략)
조특법 제 25조의 2 제1항	①(생략) 의 100분의 3(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생략) (2014.1.1. 개 정) 이 법 시행(2014.1.1.) 후 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함(제12173호 부칙 제10조)	①(생략)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5, 중소기업 및 <u>법 62조를 적용</u> <u>받는 기업인 경우(본점 및 주사무</u> <u>소에 한함)</u> 에는 100분의 10](생 략)
조특법 제25조의 3 제 1항	①(생략)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생략)	①(생략)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 및 <u>법 62조를 적용받는 기업인 경우(본점 및 주사무소에 한함)</u> 에는 100분의 10]에(생략)

제3자 물류비세액공제 기준금액 계산방식 변경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조의 ①항【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 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문제점]

-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제조업체의 '자가, 2자 물류'를 '제3자 물류'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물류활동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체는 본연의 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의 제3자물류비 위탁 비율은 물류 선진국인 미국, 일본 수준인 70%이상에 못 미치치며, 당초 법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본 법의 일몰 연장이 필요
- 또한 현재의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는 '직전년도 제3자 물류비'를 초과한 금액에 3%를 적용하나, 물류비 지출 특성상 경기 부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됨
-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3자 물류비 비율을 증가시킨 법인임에도, 외부변수인 '경기 하락'으로 인해 직전연도 대비 물류비 지출액이 줄어들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함
- 기준금액을 직전년도에서 직전 3개년 평균 지출액으로 변경하여, 매년 경기부침의 영향도를 감소시켜 세액공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 가능하게 해야함

[개선방안]

○ 일부 요건 변경: 직전 3개년 평균 제3자 물류비용 초과금액의 3%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생략).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	…(생략).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
조특법	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u>직전</u>	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u>직전 3</u>
제104조의 14	<u>과세연도</u> 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	<u>과세연도의</u> 평균 제3자물류비용을
①항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액의 100 분의 3	100 분의 3

적격합병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명시

[현 행]

- 합병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서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의 취득세 발 생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문제점]

- 구조조정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하여는 법인세, 의제배당, 취득세 등 제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면서 합병으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합병에 장애 요인이 되어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하여는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부담을 모두 경감하여 주는 합병 특례 규정들의 취지에 맞추어 일관되게 과점주주의 취 득세 부담도 발생하지 아니함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안]

○ 적격합병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명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	(2)
T E H	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조특법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	
제 120조	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	취득세(과점주주의 취득세
	출한 <u>취득세를</u> 면제한다.	<u>포함)를</u>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문제점]

-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건설사들은 아파트 시행사업 및 시공사업에서 계약자들과의 계약시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경우에도 해당 공사는 면세 아님)
- 기존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아파트 본공사의 완료시점에 수분양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본공사와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의 개념이 맞았으나,
- 최근 발코니확장공사는 수분양자들이 계약과 동시에 개인의 주거 취향에 따라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아파트 본공사의 시공과 동시에 발코니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장을 원하지 않는 일부세대에 대해서는 발코니를 제공하는 일종의 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예규 및 판례는 계약시 발코니확장공사 여부가 선택가 능하다면 부수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시에도 발코니를 제공받는 계약자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나,
- 발코니확장공급을 받는 계약자들은 동일한 국민주택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도 발 코니확장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상황에 직면함

[개선방안]

○ 발코니확장은 개인의 주거 취향에 따른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아파트라는 재화와 별도로 제공되는 상품이 아니라 아파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민주** 택의 발코니 확장의 경우 면세적용 필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기준 완화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규정에서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 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해산 요구 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으며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해산 요구도 없이 사업이 정체되거나, 혹은 주민들의 사업 관련 갈등 및 소송 진행등으로 해산 혹은 사업진행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업지 존재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조 23의 신설은 이러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여금 또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채권 포기를 통한 손금산입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시켜 뉴타운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함임
- 그런데 정비사업 중 일부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를 처분받 기 어려운 사업지 다수 존재
- 시공사는 사업이 완전히 정비구역지정의 해제나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 가의 취소로 인해 실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의해 지속적으로 대여금이 지급되어 예상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규모가 증가할 부담이 있으며, 기존의 채권 또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 있음
- 뉴타운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정비사업 지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

[개선방안]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도정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승인 또는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정기적인 절차인 <u>결산보고 등 정기총회를</u> <u>3년간 개최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지</u> 또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u>제16조의2</u> 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	<u>16조의2</u> 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
	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립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정
	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	기총회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경
	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	<u>우를 포함한다.)</u> 해당 정비사업과
	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
조특법	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제 104조	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
제26항 제1호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	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
	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
		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관련 대금 수취시기 명확화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전용계좌 를 통해 대금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의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월합 발행 가능함
- 스크랩 등 거래 시 대금 거래는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 받았을 때"라고만 규정 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제3항)

[문제점]

- 제품 생산 과정에서 구리 스크랩 등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업종이 있으며, 매일 발생되는 구리 스크랩 등을 사업장 내에 보관하는 것은 생산 효율성 및 사업장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 중 수시로 거래처에 출고 처리 함
- 구리 스크랩 수량 확정은 공급자 사업장에서 출고 후 매입자 사업장에 도착 후 매입자의 계근이 이루어져야 수량이 확정되는 바, 사업장의 지리적 거리가 먼 경우 출고한 당일 매입자가 계근 하는 것이 불가능 함
- 또한 업계 관행 상 월 중 수시로 발생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시 단가 확정은 월말 의 영국 비철 금속 거래시장인 LME 시세와 그 날의 환율을 반영하여 확정 하므 로 매 공급 시점에 대금거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개선방안]

○ 구리 스크랩 거래 시 대금 거래시기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때로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
	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u>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u>
T E H	<u>공급 받았을때에는</u> 구리 스크랩 등	공급 받았을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조특법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	<u>주고 받은 때에</u> 구리 스크랩 등
제106조 9	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
제3항	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	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
	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상향

[현 행]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②)

[문제점]

- '공제한도 300만원'으로는 국민의 소비를 장려하기에 역부족
 - 원천징수자 입장에서 각종 공제가 축소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동법 제132조의2) 가 신설되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증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 상황
 - 체크카드 공제율이 증가(25%→30%)했으나, 한도 적용으로 실질적 혜택은 미미

[개선방안]

○ 내수진작 및 그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	

중고차 부가세 산정방식을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

[현 행]

- 현재 중고차의 매입 부가세 세액산정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적용 (공제율 109분의 9 적용, 2014. 12. 31. 일몰제)
- 기재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중고차업계에 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도로 인식 하며, 공제율을 적진적으로 축소 중

[문제점]

○ 현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복 과세 이슈, 공제율 축소에 대한 소모적 논쟁, 세 부담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는 부작용 초래

[개선방안]

○ 중복과세, 음성거래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줄이고 세수 확보 및 중고자동차 시장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부가세 산정을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	세액 공제특례) <u>①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u>
	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
	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
┃ 조세특	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하 좌동)
례제한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	
법	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	
제 108	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	
조	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 2014.1.1. >	
	1. (생략)	1. (생략)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2. (삭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면제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 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

[문제점]

-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PFV의 취득 등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 감면시, 감면분 농어 촌특별세 역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은 취득세, 재산세 등만 감면

[개선방안]

- 투자의 활성화 등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분 농특세 역시 감면되는 게 마땅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제1호에 추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농어촌 특별세 시행령 4조	⑥「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21,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및 제126조의6에 따른 감면	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감주기과세의 간접수출 제외대상에 일반법인 포함

[현 행]

- 2013년 1월 1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제품, 상품의 수출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그러나, 간접 수출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2014년 1월 1일 법률개정 및 2014년 2월 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간접 수출하는 제품, 상품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제외범위가 확대됨.

[문제점]

- 수출은 중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국가 경제에 중요하게 이바지 하고 있는 부분인 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 당함.
- 기업들은 다양한 경제 상황과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수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사를 거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이미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면 될 부분일 것임.
- 또한, 일반 법인에 대하여만 이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잉금지 위배 등 위헌 소지도 다분함.

[개선방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간접수출 제외 대상 범위 합리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⑧ 법 제45조의 3 제4항에서 "중소기업	⑧ 법 제45조의 3 제4항에서 "중소기업
	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	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
	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	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
	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	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
	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	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
	로 한다.	로 한다.
	1.	1.
	2.	2.
	3.	3.
	4.	4.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
	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	적으로 특수관계법인 <u>.<괄호 삭제></u> 과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거래한 매출액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과 거래한 매출	
	액	
	6.	6.

일감주기과세에서 타기업집단과의 거래 제외

[현 행]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시 제외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제외됨

[문제점]

○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개인별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파악하고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하는데, 납세를 하는 개인이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정보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 능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라 판단됨. 또한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자신들의 개인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업집단의 개인주주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매출액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	(좌동)
	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	
	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	8.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상증령	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 한다.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34조의2	1.	
⑧항	2.	
	7.	
	<신설>	

일감주기과세에서 프로야구구단 계열사 광고매출 제외

[현 행]

○ 프로야구단의 경우 수익구조상 계열사에 대한 광고매출 등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발생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 수혜법인에 해당

[문제점]

-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익구조상 계열사 광고매출이 총 매출액의 30% 를 초과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에 해당되나 계열사 광고매출은 프로야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음
- 또한, 그룹 계열사들이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프로야구 경기를 통해 광고비를 지출한 계열사들에 대한 광고를 실제 수행함으로써 당해 계열사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임
-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열사로부터 광고매출액이 발생되더라도 대부분 의 금액이 프로야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영업이익 발생이 미미하나 계열사 광고매출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에 해당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부적으로는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이 부당하게 계열사 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야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한편,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이 2군 경기장 등에 대해 대대적인 증설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회계상 자산처리가 이루어지고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게 되므로 회계상 영업이익이 일부 발생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영업외비용) 부담으로 인해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
- 기업의 프로야구단 운영은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여가시간

활용, 유소년 선수육성과 아마야구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과 같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그룹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애사심 등을 고취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역할 등을 고려 할 때 일부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개선방안]

○ 기업의 프로 스포츠단 운영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을 주된 목적사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수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
	수혜법인으로서5 법인세법 제1	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조레비	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상증세법 시키고	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이	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시행령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
제34조의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및 <u>민법제</u>
2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설립된사단법
제1항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정	인에가입되어있는, 프로 스포츠단 운영
	하며… 이하 생략	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은제외
		한다)에 한정 하며… 이하 생략

업종별 정상거래 비율 현실화

[현 행]

○ 법조항 : 상증령 §34의2 ④

○ 내용 : 정상거래비율을 중소·중견법인은 50%, 일반법인은 30%로 차등화

현 행	개 선 안
□ 정상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차등화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ㆍ중견법인 일반법인
100분의 30을 말한다.	50% 15%

[문제점]

- 정상거래비율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50%로 높인 것은 긍정적이나 일반법인 (대기업)은 대상에서 빠진 점은 아쉬움
-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도 정상거래비율 30%를 일률적으로 적용
- 법 제45조의3①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30%로 일괄 규정
- 일부 업종은 특성상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 내 제조사간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품질·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목적) 일률적 정상거래 인정비율 규정으로 비현실적 세부담 발생

[개선방안]

○ 제조업, SI 업종 등 특성상 계열내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은 정상거래비율 상향

일감과세 제외 수출범위에 용역수출 포함

[현 행]

○ 법조항 : 상증령 §34의2 ⑦

○ 내용 :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국외 소재 특수 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 관계 거래비율에서 제외하나 용역수출은 포함

[문제점]

- 수출장려를 위해 제품·상품의 수출과 기타 수출을 차별할 이유가 없음
- 용역수출 및 간접수출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화획득 장려를 위해 제품·상품의 직수출과 차별할 이유가 없음
- 로열티 수취, 기술지도 등의 기술수출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과세대상 매출액에 포함됨
- 용역수출을 제품·상품의 수출과 차별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며, 제조업과 차별하는 것임
- 용역거래의 외국기업 이전으로 세원·투자·고용·기술 해외 유출 발생
- 국외 특수 관계자가 용역거래를 위해 계열사 대신 현지 외국기업 선택 시 국부 유출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감소 및 국내투자 감소 예상됨
- 해외에서는 기업선택이 제한적이며, 업체 변경에 따른 품질·안정적 용역 확보, 비용증가 등의 문제로 기업경쟁력 약화 예상됨
- 물류, 광고, IT 등의 용역은 제품정보 및 기술정보가 내재된 경우가 많아서 해외업체로 변경시, 국내 기술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 예상됨

[개선방안]

○ 용역수출도 일감과세 대상에서 제외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합리화

[현 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에 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율인 8%로 할인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 액보다 작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부가액보다 작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명문규정은 없으나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채무가액에 대해서 8% 이자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평가한 가액은 장부가액보다 작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음.

[문제점]

- 차입금과 사채 등의 채무가액에 대하여 원본가액과 표시이자를 회계상 유효이자 율로 할인한 가액은 실제 채무가액의 적정한 가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년을 초과하는 채무가액에 대하여 8%의 이자 율을 적용하여 할인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채무가액의 적정한 가치를 보여주기엔 할인율이 너무 높다고 볼 수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가 과대하게 계상될 수 있는 문제
- 회계상 계상한 채무의 현재가치 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의 이자율로 일괄적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율인 8%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시이자율을 낮추거나, 회계상 회사가 적용한 이자율을 인정해야 함.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도 인정

[현 행]

○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상 평가방법은 과거연도 실적에 의한 순자산가치와 손익가 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음

[문제점]

○ 주식가치는 미래 수익성이나 현금흐름 등의 영향을 받으나, 상증법상 평가법은 과거실적에 의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개선방안]

○ 현금흐름할인법도 경제적실질을 반영할 경우 상증법상평가방법으로 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
	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	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
	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	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
	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	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
	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 상속세 	한 가액으로 한다.	한 가액으로 한다.
및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
증여세	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법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
시행령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54조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한다) (2010. 2. 18. 개정)
	②, ③ ,④, ⑤ 생략	②, ③ ,④, ⑤ 좌 동
	< 신 설 >	⑥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현금흐름할인
		법등을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도 평가
		액으로 할수 있다

負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현 행]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성상 증여의제이익이 수혜법인의 영업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법인세상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 제가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증여의제이익은 회계상 영업 손익에 특정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되는 바, 유보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특정사업연도에는 負의 금액으로 산출 되었다가 향후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

[개선방안]

○ 법인세법상 결손금 이월공제를 준용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세액 공제특례) <u>①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u>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
	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
조세특	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하 좌동)
례제한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법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제 108조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	
	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 2014.1.1. >	
	1. (생략)	1. (생략)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2. (삭제)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선

[현 행]

○ 해외법인間 합병,분할 等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 관련 현지 국가 법률에 의거한 평가 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 분할이 진행되나 해당 평가액이 국내 법인세법上 시가로 인정 받지 못함

[문제점]

○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

[개선방안]

○ 현지 합병, 분할 관련 법률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평가액에 대한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바, 현지 국가의 세금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

Ⅳ. 소득세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

[현 행]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항 단서에서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 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각 분기마다 이루어지므로 타 소득에 비하여 납세협력부담이 증가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한 매월 원천세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필요성이 낮음

[개선방안]

○ 현행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분기별(연4회)에서 반기별(연2회)의 신고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 문 소득세법 제164조	① (생략)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① <u>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u>
	를 제출하여야 한다.	<u> </u>

소득세법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 범위 축소

[현 행]

○ 피투자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인 거주자는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고, 특정한 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손실거래명세서도 함께 제출함

[문제점]

○ 주식보유 비율 판단 시 '직접' 뿐만 아니라 '간접'이 포함되면서 개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수가 많아졌으나 개인이 해당 해외현지법인들의 자료를 수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간접출자법인이 국내법인일 경우, 동일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서류를 개인과 간접출자법인이 이중으로 제출하게 됨

[개선방안]

○ '직접 또는 간접'을 '직접' 10%로 변경하고 간접출자법인이 국내법인일 경우 제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자료제출 의무】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좌동)
	(생략)	
	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가
소득세법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	
217조의2	다) 1억원 이상인 거주자	1억원 이상인 거주자
①항 2호	<신설>	다만 피투자법인의 법인주주가 제출
		한 경우 제외함.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u>나.</u>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생략)	소유하고 (생략)

300만원 이내 비과세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국외 근로자 범위 확대

[현 행]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함
- 반면 국외 건설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 등에서 근 무하는 해외지사의 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서만 비과세 적용함

[문제점]

○ 건설업은 특성상 수주에서 목적물 완성까지의 과정에서 직접 시공을 포함한 다양한 제반 업무수행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하나의 시설물을 준공하거나 완성함. 따라서 현장은 아니지만 현장공사에 부수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지원 업무(영업, 인사노무, 자재관리, 재무회계 등)를 수행하고 있는 곳(예: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제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개선방안]

○ 해외 건설 현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업무가 당해 수행되고 있는 해외 건설현장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
	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	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
	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	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
소득세법시행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령 제16조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
제1항	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	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
	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	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및 그
	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를 제공하고 받
		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
		의 금액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
소득세법시행	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	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
규칙 제8조	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요한 <u>부수적인 제반업무 등이 이루</u>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	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른 연금 외 수령소득의 완납적 원천징수 전환

[현 행]

○ 12%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15%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되어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소득수준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과세됨

[문제점]

- 과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득수준에 따라 6%에서 38%만큼 세액공제 효과가 있었기에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시, 해당 납입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 '14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2%의 일정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효과를 얻음. 반면 이를 해지하게 될 경우 연금 외 수령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소득에 따라 최대 38%의 과도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연금 외 수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인 12%를 초과함

[개선방안]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경우, 12%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소득세법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1조	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	는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21소 제1항	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21호 제21호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세리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다목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	<u>마목 및 바목의 소득은 제외한다)</u> 으로
소득세법	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제 14조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	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제3항	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
제7호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바. 제21조제1항제21호가목에 따른
		<u>기타소득</u>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	나. <u>제21조제1항제21호나목에</u> 따른 기
소득세법	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	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제 129조	서는 100분의 15	대해서는 100분의 15
제1항	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	다. <u>제21조제1항제21호가목 및 제14조</u>
제6호	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
.,		해서는 100분의 12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자가운전보조금 금액 인상

[현 행]

-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호에서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 (이하 자가운전보조금)를 당하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

[문제점]

○ 자가운전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용 휘발유 값 및 물가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1994년 이래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개선방안]

○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 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 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 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 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식대 금액 인상

[현 행]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10만 이하의 식사대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문제점]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인정되는 월 10만원의 규정이 2003년에 개정되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사를 현물로 직접 제공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개선방안]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로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 제 12조 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법 제 12조 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시행령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제 17조의2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
	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상 기부금(개인) 공제 확대

[현 행]

-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의 세금감면 제도가 소득공제 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최대 30%를 공제하고 있음

[문제점]

○ 기업의 임직원들의 개인기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 개정 조세정책이 개 인들의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개선방안]

○ 지정기부금의 한도 율을 30%→50% 로 확대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 법률과 시행령 적용시기 통일

[현 행]

- 소득세법 개정이 '13.1.1일부터 적용되었으나, 해당 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시 행령은 2월에 공포됨
- 이에 따라 '13. 1~2월 중 퇴직한 대상자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였음
- '13.1.1 일자로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금액 산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5조2항을 개정함. 반면 이에 대한 시행령은 '13.2.15일에 개정

[문제점]

-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기 이전 기간 동안은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려우며, 이후 국세 청 신고시 해당부분을 소급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문제 발생
- '13.1~2월 중 퇴직한 대상자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였고, 추후 회사에서 소득신고 시 추가 세액에 대해서 퇴직자에게 일일이 안내하여 입금을 받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 세부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려운 만큼, 추후 세법이 개정 될 때에는 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기 통일 또는 세부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소급 미적용

V. 부가가치세법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 행]

- 최근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세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사회 공헌도와 비교해 매입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미흡함
- 현행법상 차량길이 3.6미터 이하, 폭 1.8미터 이하인 전기자동차만 매입세액 공제가능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상 운수업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영업용(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지 않는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어 검침, 수금, 영업일반, 신규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경차를 제외 한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자원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검토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입세액공제 등의 세재혜택이 미흡함
- 국제적으로도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친환경차 구입 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비 등 성능에 따라 최대 \$ 3,150의 세액공제 실시
- 일본의 경우 친환경차 구입 시 관련 세금(취득세, 중량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 뿐 아니라, 구입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조기 보급 촉진
- 현재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언론홍보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1. ~ 4. (생 략)	1. ~ 4. (생 략)
제39조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①항 5호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u>직접 영</u>
	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업으로 사용되는 것과 전기자동차는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 있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현 행]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비영업용 : 영업에 직접 사용(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차량매매업, 운전학원업 등) 하지 않는 경우
- 소형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배기량 1천cc 以下는 제외)

[문제점]

- 당초 입법 취지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실무적 판단에 있어 나타날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
- 운수업 이외의 일반 기업도 영업직원이 거래처 방문이나 소형물품 운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소형승용차의 취득액, 유류대, 정비 부품대 등 제반 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 법인세법 상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혹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 인정이 가능하여 비영업용인 소형 승용차도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부가세법 상에서 이러한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불합리함

[개선방안]

○ 거래 실질에 맞게 사업과 관련 있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중략)
	부가세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	<u>5. 삭제</u>
	제39조	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	
		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	
		세액	

소멸시효중단·미수채권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현 행]

- (대손금 처리 가능 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①항에 의거해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성립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인가 결정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함
-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제②항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시기는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 될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 다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함
- 청구,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될 경우 거래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분할하여 받기로 한 가액에 대해 추후 대손사유 발생 시 거래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회수를 하기 위한 법률상의 조치 (청구·압류·가처분·지급명령·일부승인)는 대부분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시기로부터 5년 이내 소멸시효 완성되기 어려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한 회생결정 이후 미수채권 발생 시 대부분 대손세액 공제 가능기한을 제한하는 5년이 경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움

[문제점]

- 사업자의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지급명령신청, 가압류, 경매신청 등)과 거래상대방의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회생인가결정 등)과 같은 **적극적인 법률행위가** 매출자에게는 오히려 대손세액 불공제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액 거래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회수불능채권 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규정임
- 그러나 법률 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또는 회생결정인가 이후 발생된 미수채권으로

인하여 거래시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불가는 공급자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며 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제②항 규정에 단서조항 삽입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87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87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 ┃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으로 한다.	대손세액으로 한다.
	<신설>	단, 법률적 사유에 의한 소멸시효
시행령		중단시에는 중단 후 새로이 시작하
제87조 ②		는 소멸시효의 만료일과 재화나 용
		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까지의 경과
		일 중 더 긴 날짜를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한으로 하며, 회생결정인가
		이후 발생된 미수채권은 미수사유
		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u>기한까지로 한다.</u>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

[현 행]

○ 법인의 채권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처분하는 경우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문제점]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식(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호)하지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법인세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상기 조문에 따라 일부 채권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주식 평가 시 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도 없으므로 준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준용하여 과세논리로 적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상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채권자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	① (좌 동)
	(생략)사유를 말한다.	
부가령	<신설>	다만,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계산시에
제87조		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
제1항		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
		<u>가로 평가한다.</u>

여객운송용역의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 행]

-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여객운송용역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7호)
- 그러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하고는 여객운송업의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2호)

[문제점]

- 업무 출장 시 항공기 및 고속철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 해당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거래는 과세거래로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매출세액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매입자의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안]

○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대한 여객운송용역은 신용카드 매입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부가가치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여객운송업(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
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	조의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
시행령	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운송용역은 제외한다.)
제88조		
제4항 2호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고속버스는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 '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 시 고속버스는 최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 시내·직행형 시외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포함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문제점]

- 고속버스는 자가용 증가, 국민소득향상 등의 변화로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
- 노인·주부·학생 등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화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분류
- 고속버스 역시 불특정 다수의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경 쟁 교통수단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고속버스는 직행버스보다 km 당 요금단가가 낮은 서민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만 부가가치세 부과
- ※ 고속버스: 우등 91.14월, 일반: 62.35원, 직행버스: 116.14원
- 고속철도 영향으로 인해 장거리 대중교통의 한 축인 고속버스의 경영악화로 존폐 위기에 직면
- 정부는 철도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장거리 대중교통의 주축 중 하나인 고속버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고속버스 포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략)	1.~6. (생략)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u>(삭제)</u> ,
부가세법 제26조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제20조 	(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8.~20. (생략)	8.~20. (생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선적시로 의제

[현 행]

○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를, 용역의 공급은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동법 제16조 제1항)를 각각 원칙적인 공급시기로 정하며, 다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시를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특례규정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문제점]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특례규정의 취지상 수출재화 운송용역의 경우에도 선적시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나 현행 규정은 수출재화와는 달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하여는 선적시를 공급시기로 보지 않음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공급시기를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선적 시로 앞당겨 수 출거래와 관련한 납세절차를 간소화·명확화 함으로써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수 출거래를 장려하고 있음
- 외국항행용역 또한 재화수출의 성격과 동일하고, 외국항행용역에 대해 영세율의 적용하고 있는 취지도 수출하는 재화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수출을 장려하는데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국항행용 역의 경우에도 수출재화와 마찬가지로 공급시기를 용역완료시가 아닌 화물의 선 적시로 하는 것이 타당

<수출재화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를 선적시로 보아야 하는 이유>

- * 수출재화의 경우
- 1. 선적 시 인보이스를 발행함에 따라 공급대가 확정
- 2.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재화의 인도시점을 추적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움
- 3. 영세율 거래로 인해 굳이 재화의 실제 인도시까지 기다려 부가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실익이 없음
- *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 1. 거래관행상 화물선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 확정
- 2. 화물입항지가 다양하고 항행지연 등으로 용역 완료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움
- 3. 영세율 거래로 공급시기를 용역완료시로 강제할 실익이 없음

○ 외국항행용역의 용역완료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약이 많음

* 외국항행용역의 용역완료시를 공급시기로 할 경우

- 1. 운송용역료의 담보적 기능 상실
- 항행지가 다수인 경우 입항 시까지 용역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항행지로의 출발을 지연시킬 수 없어, 선사는 선적화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화물을 내어주어야 함
- 2. 외국항행용역의 특성상 통제가 어려운 변수들이 많음
 - 1회의 외국항행용역이라도 다수의 도착지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다양해지고 항행지연, 인수지연 또는 화물인도 장소까지 최종운송수단 변경에 따라 <u>용역완료시기를</u> 확정하기 어려움
- 3. 현지입항 또는 인수 지연 시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증가로 수출업자 부담 가중
 - 선적화물 인도 시에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지 대리점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추가업무를 맡겨야 함. 이에 따라 <u>선사의 입항지마다</u> <u>추가 대리점 비용 발생</u>
- 수출재화와 마찬가지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를 선적 시로 보는 것이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영세율 적용 정책 등)에 부합함

[개선방안]

○ 외국항행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를 선적 시로 보는 특례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부가가치 세법		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시행령 제29조	(중략) <신설>	(중략) <u>5. 법2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선(기)적일</u>

확정신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 행]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 34조 제3항에 해당할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될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문제점]

- 실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한 오류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더해 매입자가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는 것은 지나침
- 간접세인 부가세는 매출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자는 공제받는 구조이나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경우 부가세가 이중과세 됨
-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매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자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 특히 과세기간 종료월인 6월, 12월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월에 비해 확인 및 검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1/1일자 세금계산서를 6/30일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6/30일자 세금계산서를 7/11일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 고의나 조세 탈루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착오나 지연 발급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 (가산세만 부담)
-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 신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
	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부가세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말한다. (2013. 6. 28. 개정)	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제75조	1.~2. (생략)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u>해당 공급</u>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	확정신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
	개정)	우를 포함한다)
	4.(이하 생략)	4.(이하 생략)

매입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하향 조정

[현 행]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1호, 동법 시행령 제108조 5항)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받는자는 단지 보조적인 지위에 불과함
-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를 회피하기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것은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매입처별합계표상의 공급가액 과다'와는 다르게 공급받는자가 납세협력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의 지연발급가산세와 동일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개선방안]

- 지연수취가산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하
- 현재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부가가치세 법 제60조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연수취 가산세대상)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연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의 연장

[현 행]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3항)

[문제점]

- 공급가액 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월초에 연휴가 있는 경우, 또는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수의 매출처 중 일부 업체의 세금계산서 지연 승인 발생 시공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이나 삭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다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금액 차이로 인한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일자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안
ㅂ기세버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세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16조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16조의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4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이 속하는 달의 <u>다음달 15일까지</u>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연장

[현 행]

○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e-sero 사이트)에게 전송해야 함

[문제점]

○ 금요일 업무 종료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시스템 오류로 전송이 누락된 경우 업무 종료 후부터 차주 월요일 오전까지 오류 확인 및 수정이 어려워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개선방안]

○ 전송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을 전송 기한으로 연장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	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
시행령	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산서 <u>발급일의 다음날(다음날이 공</u>
제68조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
		의 다음날을 말한다)을 말한다.

수정세금계산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 허용

[현 행]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인 공급자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출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관련 예규)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문제점]

- 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해 하도급자에게 주고 하도급계약에 의거 일정부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 하도급업체 부도 등의 사유로 관련 하도급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기존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회수하여야 하고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하지만 하도업체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 행방불명, 발급거부 등의 이유로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입자가 거래관계를 소명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허용해야 함

[개선방안]

○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자가 거래사실을 확인 신청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 배제

[현 행]

○ 매출 및 매입세액 신고 오류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잘못 기재되어있을 때,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별개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문제점]

- 합계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세부내역이므로 당초 매출 및 매입세액에 오류 가 있을 경우 합계표에도 잘못 기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별개로 합계표 불성 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 중복 적용을 배제(법 제60조 9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신고오류로**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부가세법 제60조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적용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의 개선

[현 행]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을 배제하고 안분비율에 따라 공제함

[문제점]

-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비율이 극히 미미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함
- 공통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 공급액이 극히 미미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산출해야 함
-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비율 적용은 세수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킴
- 면세공급액의 비율이 극히 낮음에도 공통매입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적용하는 것은 안분계산의 경제성 및 중요성에 따라 납부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세법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함

-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이 1% 미만인 경우는 안분계산 생략
-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극히 미미한 경우(1% 미만)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적용을 생략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
부가가치세법	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81조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
		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총공급가액 중
	· ·	면세공급 가액이 100분의 1 이상이
		며,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가세 신고 시 단순 누락 매입세액 공제 항목 신설

[현 행]

○ 현행 세법 규정에서는 전기 부가세 신고 시 단순 누락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이외에는 전기에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

[문제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E-sero 로의 전송 등 시스템의 발달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쉽게 집계할 수 있어 매입세액 과다신고를 통한 탈세의 우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단순 누락으로 인해 전기에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경정청구 밖에 없음
- 국세청 E-sero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 되고 소액의 매입세액인 경우에도 전기에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 수행부터 환급까지 불필요한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시간도 일정 소요되므로 과세관청 및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경정청구 기한인 3년 이내의 단순 누락 소액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 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명 칭: 전기누락 매입세액 공제
- 공제한도: 부가세 신고 시 누락 건 별 매입세액 5백만 원 이하
- 절 차: 당기 부가세 신고 시 전기의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승인번호와 함께 신고서에 반영하며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전기 부가세 신고서,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 전),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 후)
- 전기누락 매입세액 공제로 매입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없음

면세 · 영세율 적용 거래에 일반세금계산사를 잘못 수추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 행]

-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외국항행 용역에 대해서만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인정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舊,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의 개정으로, 기존에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짐
- 또한 영세율 적용 거래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 산서를 교부·수취 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면세 및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수정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도록 개정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 행]

○ '14년 세법 개정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도록 되었음

[문제점]

- 사업자가 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착오 등의 사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부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하는 것은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임
- '13년 세법개정시 상기와 같은 선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나, '14년에 다시 불공제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 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개선방안]

○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출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 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① (좌동)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중략)	
	3. (삭제, 2014.1.1)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 (하략)	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
		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하략)
	[부가세법 시행령 제76조]	[<u>부가세법 시행령 제76조]</u>
부가세법	(삭제, 2014.2.21.)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
제39조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
		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고그런머니 바그런 레그레시시아 메흐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
		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
		<u>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u>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
		<u>합 세46보 및 세49보에 따라 합세지 된</u>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u> </u>
		│ ○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
		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지 아니할 것

기타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 업종 추가

[현 행]

- 기타외화획득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음
- 해외 셀러에 대한 오픈마켓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용역에 해당 (전자상거래업(47911))

[문제점]

- 유사한 성격의(중개 및 대리활동) 용역에 대해서 통계청이 정한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 중개(상품중개업)의 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나, 소매중개의 경우(전자상거래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안됨
 - * 상품중개업(4610):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도매중개 및 대리활동
 - * 전자상거래업(47911): 온라인상의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

[개선방안]

○ 오픈마켓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업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명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생략)	② (생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부가가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
세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시행령	로 받는 것	로 받는 것
제33조 ②	가.~바. (생략)	가.~바. (생략)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차. (생략)	아.~차. (생략)
	<신설>	타. 전자상거래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현 행]

-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
-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
- 중계무역 등 :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원

[문제점]

- 직수출은 수출신고 번호, 금액을 기재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됨
- 중계무역 등 기타수출의 경우 건별로 계약서 사본, 외화입금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대형 수출기업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함
- 외화입금증의 경우 해당 매출 건만이 아닌 여러 건이 합해서 입금되므로 과세관청에서 동 입금증으로 영세율 매출 건의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임

[개선방안]

○ 수출기업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 제출을 갈음하고, 국세청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생략)
부가가치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세법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
시행령		
제 101조		
		<u>본다</u>
		1.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에 영
		세율 첨부서류를 보관하고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제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요건 완화

[현 행]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이용대금명세서 제출의무와 5년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여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한 경우,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되거나, 구분기재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수기로 별도로 구분기재 된 실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문제점]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자적으로 전송받는 경우 거래당시 현장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적격증빙을 보관하는 기업들도 **별도의 실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기재를 확인하거나 가맹점에 별도 구분기재를 요청한 뒤 증빙을 중복해서 보관해야**하는 비효율성 초래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는 거래내역 중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정보 관리 미흡에 기인함

[개선방안]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 래내역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조회 등에서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제출의무와 보관의무이행만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철광석 · 유연탄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 원자재, 설비 등의 수입시 징수의 편의상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함
- 수출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입통관 후 관세청에 납부(45일 이내)하고 익월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음

[문제점]

-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국내생산품과 수입품간의 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철광석, 원료탄은 거 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원료탄(유연탄)은 국내생산이 없고 최종 소비재 가 아니므로 가격 형평성 유지를 위한 부가세 과세의 실익이 없음
-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재화의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관청(세관)과 환급관청(국세청)이 상이함에 따라 납부와 환급을 반복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되어 동기간 동안 기업에 자금부담을 주고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대규모 수출기업이 존재하는 세무서의 경우 연말 세수부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함

[개선방안]

○ 철광석, 유연탄에 대한 면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법 제26조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한다.
	1. ~2. 생략	1.~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3. 연탄(유연탄포함)과 무연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u>하향식 연속</u>
부가가치세	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 유
법 기본통칙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	<u>연탄의 공급에 대하여는</u> 면세하나,
12-0-3	• 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한 단축

[현 행]

-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항)
- 수출기업이 조기환급을 매월 신고시 차월 25일까지 신고,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 진행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문제점]

-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중 거래징수 된 부가세를 환급신청 하는 것으로 환급액이 큰 수출 기업의 경우 자금 압박이 발생됨
-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될 때, 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환급기한이 약 20년 동안 추가 단축 개정이 없었음 (1993년 12월 31일 개정)
- 세무서의 조기환급 처리 절차상, 내부 검토 후 약 4차례의 결재를 거치면서 환급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 현재는 국세 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자 정보가 국세청에서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세무서의 내부 절차 간소화로 환급기한 단축이 필요하며, 조기환급제도 원래 취지에도 부합함

[개선방안]

○ (1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①항의 조기환급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
부가가치세법	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	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
시행령	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제107조 ①항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	후 <u>10일 이내에</u> 예정신고한 사업자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2안) 수출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시 해당 월 말일까지 환급 실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
	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	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
	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조기	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조기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
	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
세법	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	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
시행령	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제 107조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① <신설>	①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수출기업이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기
		환급기간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사업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한 첨부서류 간소화

[현 행]

- 부가가치세법 상의 첨부서류 규정으로 인하여 회사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내역 등과 관련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개별소비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시 이를 이용하여 유류공급명세서로 첨부서류를 갈음
- 개별소비세법의 경우 외국항행선박 석유류의 경우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의 제출로 거래사실을 증명

[문제점]

- 정부 추진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등 관련 업계 시장 증대에 기인하여 선박급유 관련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행법령 상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
- 다종의 세무신고가 전자화 또는 전자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추세에서, 해당 거래내역 및 첨부서류와 관련한 정보가 세무당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함
- 납세자의 편의 및 세무당국의 원활한 신고자료 관리를 위하여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종전 선(기)적완료증명서에서 유류공급 명세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개선방안]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종전 선(기)적완료증명서에서 유류공급명세서로 전환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구 분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11. (생략)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신설> 13. (생략)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11. (생략)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1항 9호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생략)

산학협력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현 행]

○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문제점]

- 산학협력단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에도 각종 산학협력 용역은 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등)에 의해 면세될 가능성이 높음
-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 발생
- 과세대상임에도 연구용역비만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
- 과세기간 경과 후 부가세 지급 시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대상임에도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미환급

[개선방안]

○ 산학협력단 용역에 대한 면세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세법	1.~6. (생략)	1.~ 6. (생 략)
시행령	<신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제45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
		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수입부가세 사후 정산 제도 도입

[현 행]

-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청에 수입부가세를 납부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화급
- 납부부터 환급까지 40 ~ 72일 정도 소요

[문제점]

- 수출업체는 원재료, 설비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와 환급 시점 차이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음
- 부가세 징수(관세청)와 환급(국세청) 기관 차이로 세수 불균형 초래
-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에게 통관 시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분기단위 로 정산하는 관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지원 중임
- 또한, 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수입 통관시점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 운영

- 수출기업에 대해 수입통관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부가세 신고시 유예분을 차감하여 환급받도록 하는 '수입부가세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
- 수입 통관시점에서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후, 부가세 신고 시 신고와 동시에 공제 받는 방식
- 관세청에서 국세청으로 업체별 수입부가세 내역을 이관하면, 국세청은 관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와 업체 신고내역을 비교 검증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부가가치	<신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세법		이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58조		사업자로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① 법 제5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신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
		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
		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정산 신청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법
		제59조 제2항의 요건에 비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에
		정산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
부가가치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세법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행령		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제 105조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
2		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을 승인
		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을 승인한 주된
		사업장관할 세관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
		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세관장 및 주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주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 이
		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
		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된 사업장 관할 세관장은 매월 재
		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정산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현 행]

○ 관광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 용역에 2009년 12월 31일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 영세율 비적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요금 상승

[문제점]

- 영세율 비적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요금 상승
- 2009년 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하는 국내 관광숙 박시설 이용요금이 2009년 대비 약 20~25% 상승하는 효과 발생
- 일본의 관광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관광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음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특별 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종료 기간인 2014년 말까지는 외국인 관 광객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 여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관광호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관광사업과 작간접세 수입이 2,070억 원이 증가하나 부가세영세율 적용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는 1,000억 원임
 - *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 관광수입 및 법인세 수입 추정: 2.070억 원
 - → 관광수입: 1,865억 원 (154,358명×1,139달러×1,061원)
 - → 법인세 추가 세수분: 205억 원
- 호텔업계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동산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숙박비 인상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넘어 1천 2백만 명 목표 달성에 기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내 조항 신설 (33조 1항 7호)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에 다른

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 다. 대금이 거주자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단,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별매품의 영수증 교부 허용

[현 행]

-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품목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및 시행규칙 제53조 3호)
- 분양목적의 주거용 건물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직접 계약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 지 않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문제점]

- 주거용 건물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와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품목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수분양자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용역의 범위 및 계약의 성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수분양자 대부분이 최종소비자**인 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도 없는만큼 그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과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개선방안]

○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품목에 대해서도 영수증 교부를 허용

VI.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한 연장

[현 행]

○ 과세결정권자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가능일로부터 '최소 5년~최대 1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인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3년 이내로 제한(동법 제45조의2)

[문제점]

-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 발생
-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국세과세권자의 경정결정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경정청 구기한이 부과제척기간보가 짧은 것은 국민의 권리(재산권 보장)가 의무(납세의무) 보다 열위에 있음을 의미
- 실제로 과세관청은 동일한 세목에서 '3년'이 지난 과소신고분, 과다납부분이 동 시에 발생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후자에 대해서는 '경청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실정
- 주요 선진국들은 양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우리 대법원도 제척기간 이후의 경정 청구를 인정한 바 있음
-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영국(6년), 프랑스(3년), 독일(4년) 등은 두 기간을 일치
- 대법원은 국세부과권 제척기간(5년) 이후에 제기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적법 한 것으로 인정(대법원2005두7006, 2006.1.26.)

[개선방안]

○ 경정청구 기한을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ച .III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국세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기본법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
$ ^{}$	세45조의2	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u>5년 이내</u>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u>에</u>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현 행]

○ 납세자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또는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이율로 가산세를 부담(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문제점]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국세환급가산금에 비해 매우 높음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초과납부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후자는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연 2.9%) 수준인데 반해 전자는 연 10.95%에 이름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연 10.95%의 이자율은 시중이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과중한 수준
-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괄 적용되며, 한도가 없어 최대 54.75% 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동법 제47조의3)는 일반신고불성실(10%)과 부정신고불성실(40%)을 구분하여 가산세율 차등적용, 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두 경우 세율이 동일
- 실무상 귀속시기 오류 및 단순 업무착오의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상 4~5년 주기로 수행)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율이 최고 54.75%(10.95%×5년)에 달함

[개선방안]

○ 납세자의 고의적인 세금탈루가 아닌 경우 가산세의 한도(최고 10%)를 설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
	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	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
	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	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
 	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u>부정행</u>
국세 기비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위로 인한 미납, 과소납부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법	다만, <신설> 「인지세법」 제8조제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의
제47조의4 	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	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을 가산세로 한다.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제도 완화

[현 행]

-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과소신고시 100분의 10의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제1항)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를 100분의 40로 정하고(동조 제2항),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및 가산세액의 계산 등은 시행령에 위임(동조 제7항)

[문제점]

- 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보다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에는 세금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이 경우 기업은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것이 아님에도 가산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선납부로 인한 이자손실도 발생
- 12년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제도에서는 선납부를 자진납부로 간주(제47조의4 제 6항)하고 있으나, 신고불성실 제도의 경우 관련 법령 미비
- 자진신고시에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최초신고 이후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부정과소신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세 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하여 자진신고하 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음
- 이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납세자의 자진신고 유인을 감소시키며, 법인의 성실신 고를 목적으로 하는 가산세 제도의 기본취지와도 배치

[개선방안]

○ 실질적으로 세금을 과세기간 이전에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과세기간에 신고하 였어야 할 금액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⑧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한
국세기본법	<신설>	날에 실제 신고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하였어야 할 과세기
제47조의3		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
		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는 것은 부정과소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 과세신고가산세를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③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 정 등의 청구)에 의거하여 자진신고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과소신 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심사·심판청구의 최장 결정기간 설정

[현 행]

- 현행 국세기본법은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으나, 보정기간 은 이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
- 심사·심판청구 결정 이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 전 소송제기 가능(동법 제56조, 제60조)

[문제점]

-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보정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최종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 으로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막연히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개선방안]

○ 심사·심판 결정의 최대기간(1년)을 법정화하여 결정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국세기본법 제65조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더라도 1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지연시 지연기간 가산세 전부 감면

[현 행]

○ 정부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의 50%를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문제점]

-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동법 제81조의15), 실제 업무과부하 등으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다수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결정기관의 행정적 사유 때문이며, 청구인 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를 전부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

○ 가산세 감면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	해당 <u>가산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u>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국세	가.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결정 •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
^{녹세} 기본법	사 결정 •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	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
제48조	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 통지가 지연	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4에 따른
\\\\\\\\\\\\\\\\\\\\\\\\\\\\\\\\\\\\\\	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	가산세만 해당한다)
	조의 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	<u>가.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u>
	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u>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u>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
	<신설>	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및 수수료 폐지

[현 행]

- 신고세액 또는 고지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국세기본법 제46조의2)
-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 수취 가능(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문제점]

-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가능 한도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대한 수수 료가 없음(지방세기본법 제74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국가)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개선방안]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및 수수료 폐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 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 하여 고지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제>

Ⅶ.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외국법인 판단기준 및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선

[현 행]

- 내국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이 15% 이하인 국가에 소재하며 그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그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국조법 제17조)
- 특정외국법인 여부 판단시 세전 당기순이익에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을 조정하여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하며, 배당가능유보소득 또한 이에 따라 계산(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8조의2)

[문제점]

- 배당가능유보소득의 부채상환 및 투자확대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전액 배당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며 투자를 위축
-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한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함이 원칙이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는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 등을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동 유보 소득을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先과세
- 통상 기업들은 사내유보된 잉여금 100%를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투자에 필요한 부분과 최적자본구조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유보한 뒤 잔여이익을 배당
- 특히 최근 해외진출기업들은 배당가능소득의 용도로 현금보유보다는 부채상환, 투자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
- 특정국가에 거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자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내국법인의 해외활동 및 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평가손익 조정자산으로 '주식 또는 출자증권'만 규정되어 있어,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손익만큼 과다하게 과세될 가능성

[개선방안]

○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재투자금액 및 부채상환액 차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영 제29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u>주식, 출자</u> <u>증권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u>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범위'추가

[현 행]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 이 때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 격으로 적용한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판단
-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금액

[문제점]

-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에 대한 규정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
- 현재의 규정은 특수관계인 소재국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현지 법규 및 관행을 반영하지 않아, 정상적인 용역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특혜 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의 소재국이 지급보증수수료 지급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두는 경우, 지급 보증수수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에 의거하여 산출한 정상가격 적용불가

[개선방안]

○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소재국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법규 및 관행이 국조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를 추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ᅵᅩᆽᄖ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국조법 시해려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	3.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 용역거
시행령	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래의 대가에 대해 규정한 한도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제6조의2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의 금액(현지 법규 및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정상가격으로 본다.	로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대가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신설>	<u>에는 그 한도를 "0"으로 본다)</u>

도매업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조건 완화

[현 행]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현지 사무소·점포 등 보유, 해당 법인 스스로 사업 관리·지배·운영 등)에는 유보소 득의 배당간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매업은 이에 해당 안됨(국조법 제18조①)
- 도매업은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제18조④)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 유럽연합(EU), 중국과 홍콩(규칙 제10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해당 판매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시행령 제36조의2)

[문제점]

-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실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국가, 같은 지역'에 판매하지 않으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에 포함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전세계 개별 국가마다 독립된 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기업들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이점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법인 소재지를 결정하며, 소재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개선방안]

○ 도매업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조건에서 지역조건(같은 국가, 같은 지역)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국조법 제18조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삭제) 특수관계 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삭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부담세율 산출방법 보완

[현 행]

○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최근 3개년 부담세율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분모)'대비 '조세의 합계(분자)'로 계산(국조법 시행령 제30조)

[문제점]

- 주식처분손익 등 현지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경우, '비과세이익'은 3개년 합계이익(분모) 계산시 전액반영되나, 결손 사업연도의 '비과세손실'은 전액반영되지 않고 '0'으로 계산되어 합리적 사유 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증가
 - 부담세율 하락요인(비과세이익)은 계산시 반영되는 반면, 상승요인(비과세손실)은 반영되지 않아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인 특정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기업이 실 제보다 많아지는 문제 발생
 - * 특정외국법인 : 부담세율이 '100분의15 이하'인 국가(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 비슷한 사례로 '결손 사업연도의 이익(-)'도 분모 계산시 전액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시행령 제30조)하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시행규칙 서식 10의4(을))' 작성시 이월결손금 사용에 따른 세액인하 효과를 납부세액(분자)에 가산조정토록 함

[개선방안]

- 결손 사업연도의 비과세손실액도 납부세액(분자)에 가산조정되도록 산출방법 보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에서 비과세손실액에 대해 납부세액 가산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아래 표에서 ⑭번 추가)

 특정외국법인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시업연도	합계
	⑬ 감소세액	세목				
의 유보소득	(이월결손금 조정)	세액				
합산과세	⑭ 비과세손실	세목				
판정명세서(을)		세액				

자회사 적자시 손회사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납세액공제의 공제 허용

[현 행]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법인세법 제57조④)
-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계산(동법 시행령 제94조⑧)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u>외국자회사의</u> * 수입배당공액 수입배당공액에 대용하는 외국 외국자회사의 해당 손회사의 외국 남부세액 * 50%) 사업연도 소득공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문제점]

- 외국자회사의 적자(赤字)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한 가접외납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외국손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한 해에 외국자회사가 손회사로부터 배당수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시현하여 해당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손회사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납세액공제 50%가 적용되지 않음
- 손회사로부터 동일한 세후이익을 배당받은 두 자회사의 경우, 흑자를 본 자회사와 적자를 본 자회사의 간접외납세액공제액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

[개선방안]

○ 외국자회사의 적자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손회사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⑧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 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신설>	⑧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의해당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Ⅷ.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100% 면세 유지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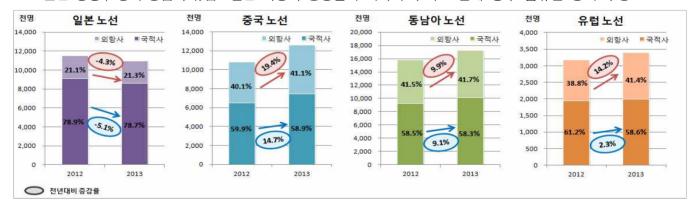
- 부과: 관세법 관세율표 별표 1(세율 : 항공기 부분품 3~8%)
- 감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부칙 제14조(법률 제11602호, '13.1.1)
- 감면내용: '13~'14년 관세 100% 감면, '15년부터 순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19년부터 감면제도 폐지(중소기업은 현행 100% 면세 유지)

구분	2013~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감면율	100%	80%	60%	40%	20%	폐지

【감면유지 필요성】

- (일자리 창출) 항공업계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지난 3년간 신규 일자리 3,157개 창출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 증가율은 2.4%인 반면 항공업계는 연평균 4.03%의 임금근로자 증가율 달성
-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수 : 17,154천명('10) \rightarrow 17,496천명('11) \rightarrow 17,763천명('12) \rightarrow 18,414천명('13)
- § 국적항공사 임금근로자 수: **25,167명('10)** → 26,850명('11) → 27,653명('12) → **28,324명('13)**
- (FTA 수입 활용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FTA 수입활용률은 64%이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FTA 수입활용률은 20% 수준으로 관세감면제도(100% 감면) 지속 유지 필요
- § 전체산업 : 한-미 FTA 수입활용률 61%, 한-EU FTA 수입활용률 66.8%('12년 관세청 통계)
- § 항공산업 : 한-미 FTA 36.%, 한-EU FTA 3.1%, 한-싱가폴 FTA 0%(별첨 2 참조)
- 항공기 부품산업은 해외 생산자 독과점 시장으로 당사국 거래업체에 FTA 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요청 하더라도 매우 비협조적임
- 특히, 가공수리분의 주요 거래국인 싱가폴, EU의 경우 FTA 협정조항 미비로 관세적 용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해외사례)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세계 각 국은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 § (중국) '11~'16년까지 항공사 등 255조 지원, 지방정부 항공사 세제지원 등(별첨 4참조)
- § (미국) 항공사 영업손실 지원 직접 40억불. 지급보증 16억불
- § (일본) JAL 2조 6천억원 지원. 해외 투자 및 사회공헌(해외 포함)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 (UAE) 국영 에티하드항공사 유류비 및 세제 등 직접 지원
- 주요 경쟁국은 우리나라가 미가입 중인 WTO Annex 4(a)(복수국가간 협정/민간항공협정)에 가입(32개국)하고 있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로 국내취항 외국 항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및 경쟁력 약화 유발
- (점유율 하락) 일본·중국·동남아·유럽 등 항공사 주요 수익노선의 외항사 점유 율 증가 추세에 따른 향후 국적사 경쟁력 약화 우려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 세제지원 정책 필요
 - * 일본노선은 국적사의 주요 수익노선으로 외항사에 비해 국적사 감소추세가 높아 항공사 수익성 저하에 높은 영향 / 중국·동남아·유럽노선은 외항사 성장률의 가속화 추세로 인해 향후 점유율 증가 추정



- (교통편익)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성^{*}이 강해 부의 정책이나 국가간 관계개선 등의 목 적에 의해 비수익 노선 운항 사례 많음
-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유지**로 인해 적자운항 감수
-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지방노선의 운항횟수 감축 또는 폐지 우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거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
 - ** 항공법 제127조(휴업·휴지)에 의거 휴지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외화획득) 국적항공사는 해외영업을 통한 대표적 외화획득 산업
- 국적항공사는 우리나라 방문 외래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으로 연간 약 77억달러*를 획득하여 외화가득률 제고에 기여

- * '11~'13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평균 해외 판매분(환율 1,100원 기준)
- 특히, 항공운송산업은 관광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산업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 필요
- * (참 고) 외래객 수 : 9,794천명(2011) → 11,140천명(2012) → 12,175천명(2013)
- (저비용항공사 육성) 정부 시책인 우리나라 대표 저비용항공사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세제 지원 뒷받침 필요
-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최신형 항공기 도입, 적극적 노선개발 등 사업다각화에 총력을 경주중으로 추가 부담은 성장동력 확보에 제약
- 해외처럼 자국의 대표 저비용항공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세제 지원 필요
- (운임상승) 국적 항공사의 비용 부담 증가는 운임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편익 감소 및 외항사와의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 추가 세수부담 시 운임단가 상승으로 항공요금 인상 불가피
- 특히, 화물운임 상승은 항공수송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전기 제품 등 우리 나라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 외항사의 국내 취항 증가, 화물운송량 감소, 탄소배출규제 심화 등으로 국적항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적항공사의 재 무악화 및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며, 이는 항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교 통편익 감소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음
 - * '08년~'13년 누적손실: 2조 3천억원
 - * '13년 4천4백억원 순손실, 702억원 영업적자 기록

[감면효과]

- (일자리 창출) 항공기 도입 촉진으로 향후 3년간 약 8,500명 신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상, 지상조업체 등 유관 협력업체 및 국내 MRO 산업 발전을 통한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
- 항공업계는 '15~'17년까지 총 8조 5천억원의 항공기 투자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 하여 항공기 도입 가능
- * 항공기(유형자산) 10억 투자 시 1.03명 고용창출효과(경향신문 '13.9.11자) 발생
- 국적 항공사들의 항공기 중정비 등의 해외 위탁 가능성을 상쇄하여 지방 공항 주변 MRO(항공기 및 부분품 정비사업,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Cluster 육성 정책의 안 정적인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 (국제경쟁력 제고) 주요 외항사들과의 대등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세계 6위 수준의 우리나라 항공운송경쟁력 유지 및 성장기반 구축

- '1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표에 따르면 여객 운송실적 세계 15위, 화물 운송실 적 세계 3위로 세계 6위 수준 달성
- (국민교통편익 제고) 관세 부과는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및 항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감면을 통하여 인상요인 해소
- 관세부과로 증가된 비용이 항공요금에 100% 반영될 경우 감면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19년부터 연간 약 8백억원의 국민편익 감소 발생

[개선방안]

○ 현행대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율 100% 지속 유지

관세 경정청구기간 확대

[현 행]

- '13.8월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제척기간'이 '경정 청구기간'보다 길어짐
- 제21조(부과 제척기간) : 2년 → 5년
- 제38조의3(경정 청구기간) : 2년 → 3년

[문제점]

○ 납세자의 권리 향상 대비 과세당국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 규제개혁에 역행

[개선방안]

○ 관세법 38조에 규정한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 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잠정신고 등 관세 월별납부 확대 허용

[현 행]

○ 보정·수정신고를 할 경우와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시 세액 차액분이 발생 할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납부

[문제점]

- AEO업체 등 기업자율심사에 의한 자진 보정·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익일 해당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정부의 성실납세기업 우대정책 운영과 상반됨
- 일별납부 발생시 세관, 은행, 기업 고지·납부처리 업무 가중

[개선방안]

○ AEO 인증업체 등 성실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월별납부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관세법 제38조의3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 정)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 정)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 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u>다만 잠정가격 신고</u> 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 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율관리 보세구역내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현 행]

○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내국물품은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 생략이 가능하나, 장치신고는 필수

[문제점]

-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생략되나, 내국물품 장치신고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미신고시 건당 과태료 100만원 이하

[개선방안]

○ 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내국물품 장치신고도 생략 가능하도록 변경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 나 기재사항의 나.
규정에 의한 나 기재사항의
나 기재사항의
ŀ.
의하여 자율관
자가 제1항제
부를 비치하고
- 경우
٦\
고)
에 의한 신고
구 각호의 사항
당에게 제출하
함
<u>의한 신고서</u>
개상의 일부를
의하여 자율
<u>의하여 자팔</u> 은 자가 제1항
- <u>^^/ 21 ^// 1 6</u> 당부를 비치하
<u>아 르 기계의</u> 하는 경우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혜택 확대

[현 행]

○ 보세공장에 반출입하는 모든 물품은 사전 세관신고 및 승인을 관세법상 반출입 신고 또는 수출입통관을 하여야 함

[문제점]

- 동일물품의 반복적 반출입시 건별 사전신고에 따른 행정관련 인건비 및 물자 낭비
- 행정처리 : 자료제출, 신고서 작성, 검토, 검사, 수리
- 인건비 : 별도 계산
- 반복적인 반입, 반출신고로 불필요 서류 과다보관

[개선방안]

○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제품과세(관세법 제188조)도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회인 경우 선반출 후 익일 세관신고가 가능토록 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	①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
	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보세공장	경우 <신설>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	경우 법 제188조 , 법 제186조제1항 및
고시	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제37조	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	「관세법」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
	품은 제외한다.	국물품은 제외한다.

IX.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본점 일괄 납부

[현 행]

○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을 사업장별 건축물연면적과 인원수 비율로 안분·계산해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별로 신고납부 함

법인세분 과세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안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해당 시·군안 건축물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출물연면적) ÷ 2 × 해당 시·군의 세율
 - ▶ 종업원수 : 해당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 ▶ 건축물 연면적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으로 함

[문제점]

- 사업장별 안분비율 산출을 위해 모든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업장별로 정확한 연면적을 산출하려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함
 - 건축물 관련 시설물 및 옥외 기계장치의 경우 도면 또는 실측을 통해 수평투영면 적을 구해야 하는 데, 일례로 호이스트, 옥외 크레인 등 옥외기계장치는 그 구조상 상하로 중첩되거나 굴곡이 심해 자산별 수평투영면적을 정확하게 구하기 어려움
 - *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연면적을 사용하면 되지만, 건축물 관련 시설물 및 옥외 기계장치는 건물과 달리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가 관리되지 않아 공인된 면적이 없는 실정임
- 기업이 산출세액을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성실안분·납부하려해도, 약간의 안분비율 오류만으로도 지자체별 과소·과다납부가 발생해 기업·과세기관에 행정력 낭비 초래함
 - 기업의 입장에서 일정한 산출세액 (법인세액×10%)을 국가에 납부함에 있어 지자체 별 안분금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액의 총액은 일정함

- 즉, 특정 지자체에 대한 과소신고가 발생하더라도 복잡한 안분비율 산출방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분금액에 오류가 생긴 것이며 기업에 세금회피 등의 의도는 없음
- 그러나 안분금액 확인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신고·납부한 자료를 부인하고 안분금액을 재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 추가 납부 및 과다납부에 대한 환급 등으로 기업과 과세기관에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

[개선방안]

○ 기업이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일괄납부** 하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법 제89조 (납세지 등)	법 제91조 (신고납부)
	①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와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
	따른 납세지. 다만,중략법인세법」제9	에 따른 납세지. 다만,중략…연결법인
		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제1항의
l 지방세법	이 둘 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납세지로 한다. (이하 삭제)
제89조	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중략… 또는	② 삭제(안분폐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	
	이 있는 경우…중략…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T 지방세법		
시행령	(법인세분의 과세방법)	삭 제
제89조		
., 55 =		

대규모 점포시설 관련 부설주차장의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

[현 행]

- 상업시설(대규모 점포)을 설치하면서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에 부설주차장 (법정 외 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부설주차장을 설치 해야함
-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한 시설로서 부설주차장 부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문제점]

- 대규모 점포시설의 인근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시설이나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시설로서 사실상 임의 처분·용도변경이 불가능함
- 점포시설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 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대지와 같이 종합합산으로 중과세 하는 것은 불합리함
- 또한, **같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유원시설업 주차 장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하는데, 대규모 점포시설 관련 부설주차장은 종합합 산 과세 대상으로 중과세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방안]

○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장도 주변 주차소요를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 심** 의를 받아 설치한 시설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지의 범위) ③-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중략~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 자으로서 「도시교통적비촉지법 제15조	는 무실구사장 설치기분면적 중약 규 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대규모 점 포시설의 부설주차장 으로서「도시교통정

지방세법 소액징수면제 대상 세액 상향조정

[현 행]

- 제95조(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 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음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않음

[문제점]

- 본 조항은 1976.12.31 신설된 조항으로서, 지방세 세수 규모 확대에 따라 소액 징수면제 대상 세액이 1976년 300원 미만, 1980년 500원 미만, 1995년 1천원 미만, 1999년 2천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나, 그 이후로 조정이 되지 않아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2천원 미만임
- 소액징수면제 세액은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1인당 GDP 2배 증가, 소비자물가 1.6배 상승, 지방세수 3배 증가 등 우리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규모 변화와 현실에 맞게 소액 징수면제 대상 세액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 2012년 지방세 세수는 54조원으로, 1998년 17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
- 소액징수면제 세액 상향 조정은 국가 차원에서는 소액징수액 신고, 관리 등을 위한 행정 비용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납세자에게는 지방세법 각 조항별 소액징수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 하는 효과가 있어 과세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있음

[개선방안]

○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액 징수면제 대상 세액을 현행 2천원 미만에서 5천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
지방세법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
제103조의	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 일 때에는 이를	외한다)의 세액이 <u>5천원 미만</u> 일 때에는
60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면제)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제119조	2천원 미만 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u>5천원 미만</u> 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면제)	(소액 징수면제)
THLUH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지방세법	1장당 2천원 미만 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	1장당 <u>5천원 미만</u> 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
세 148조	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기간 연장

[현 행]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 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건축물의 범위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인 나대 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봄

[문제점]

- 건설업은 '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유래 없는 장기 경기침체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수주액은 7년내 최저치이며, 매출액 순이익은 5년 만에 급락,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사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 * 건설수주액: 118조('09)→103조('10)→110조('11)→101.5조('12)→ 39.2조('13.上)
 - * 건설사 매출액순이익률(%): 6.4('07) → 1.7('09) → 2.2('10) → 1.4('11) → 0.5('12)
 - * 이자보상배율 1배미만 비중(상장건설사, %) : 27.6('08) → 44.6('10) → 61.1 ('12)
-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극심한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건설사들은 손해(이자비용, 유지보수비용, 매몰비용 등)를 감수하고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건설사는 추가적인 재산세 부 담은 물론 이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가중됨
 -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업 경쟁력 약화로의 전이(轉移)를 차단하기 위한 지원 시급

[개선방안]

-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한시적으로나마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
-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건설

사들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법에 따른 분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상당하여 공사를 지속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범위)
	①-3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①-3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지방세법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
시행령	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	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
제 103조	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	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
	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	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
	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	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
	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유 없이 <u>2년 이상</u>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기부채남 목적 취득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신설

[현 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 반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비과세 관련 조항 이 없음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문제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 민간사업자 가 향후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국가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본인이 소 유 또는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상 불이익을 받음으로 시설사업자의 부지활용을 상당히 제한함
-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 등) 조성 시, 해당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이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함
 -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
- (경제적 부담 발생) 민간사업자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본 시설물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그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 소유주에게 과세함에 따라 민간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발생
- (과세 형평성 문제) 향후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임에도 현재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조성 부지에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공공시설 착공이 시작된 토지는 민간소유의 일반 토지 와는 달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공공시설의 경우 비록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형도면 고 시로 그 형태가 완성되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일부터는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소유주가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기부를 위하 여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토지는 행정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기부채납시설 공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 및 매입한 토지의 경우 기부채 납을 위한 국가를 대신해 국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는 이유로 그 토지의 보유세까지 납세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세평등과도 차이가 있음
- 사권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50%감면을 받지만 이는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기 때문임. 또한 부지의 상태(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라 다르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조성원가상승에 따른 사업자 부담 및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

[개선방안]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대상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하여야 하고 사업준공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액에 대해서 환급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109조【비과세】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	3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생략)	
지방세법	1.~5. (생략)	
제 109조		
제3항	6. (신설)	1.~5. (생략)
		6. 국가 및 지방단체로 기부채납하기로 약
		정한 부동산

X.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연 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근거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 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2014 년 12월 31일 종료됨

조항	대상	내용				
포함	୍ୟା ଓ	취득세	재 산세			
		기본세율 2.8%	기본세율 0.2~0.5%(누진세율)			
78(1)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760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	토지에 대해 50% 경감			
	개발·조성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78②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	부동산에 대해 50% 경감			
78③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증축으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00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	대해 50% 경감(5년간)			
70(1)	신업용 건축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한			
784	취득자	면제 , 대수선한 경우 50%	경우 50% 경감			

[문제점]

○ (산업단지 중요성)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40.7%, 수출의 39.8%, 고용의 25.4%를 차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 산업단지 및 전국제조업 생산성 비교 >

구 분	입주업체	가동업체	생 산	수 출	고 용	가동률(%)
산업단지	5만개	46,085 개사	615조	2,223억 달러	106만 명	82%
전국 제조업	10만개	_	1,511조	5,596억 달러	418만 명	_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13.12 기준)

-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성)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소비 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 특히,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조세 감면기간의 경과 후에는 기업의 확장 등에 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세수 효과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기업 지방이전시 1.000억원 생산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조세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980.7억 원	586.1억원	63.5억 원	1,450명

- * 대기업 지방이전시 1,000억원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전산업 기준) (대기업 지방유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11.12)
- * (예) '04년 **현대제철 입주**로 당진의 '02[~]'11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지자체 중 최고인 연평균 17.2% 기록, '13년 하반기 고용률은 市지역 중 2위(66.4%)

< 현대제철 입주 전후 당진의 경제지표 변화 >

당진시	97년(한보철강 부도)	'03년(현대제철 입주 직전)	'12년(당진시 승격)
주민등록인구	12.5만명	11.6만명	15.5만명
사업체수	n.a	6,916개	9,989개
지역내총생산	n.a	2.6조원	6.9조원(11년)
지방세수	434억 원	799억 원	2,352억 원

(자료 : 통계청)

- 또한,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은 평균 95.6%로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높은 수준이며, 세제 혜택은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세제감면 필요
- * 시도별 산업단지 분양률 현황: 전국 평균 95.6% (대전 100%, 광주 99%, 충남 87% 등)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4.2월 기준)
- * 투자·고용 결정시 세제혜택 고려 정도(전경련, '13.6): 약간·많이 고려(81.5%), 고려하지 않음(17%). 기타(1.5%)
-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우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공단조성비 및 입주기업의 건축 부담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전이 우려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 및 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항 일몰시 세율이 5.6배 급증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구 분		감면시 세율	일반과세 세율	비고	
	합계	0.56%	3.16%	5.6배	
취득세	취득세 본세	0	2.80%	원시취득 기준	
위득세 	농특세	0.56%	0.20%	구 취득세의 10%	
	교육세	0.00%	0.16%	구 등록세의 20%	
* 농특세와 교육세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환산한 세율임					

- * 재산세의 경우는 토지재산세 2.7배, 건물재산세 3.1배 증가 예상
-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산업단지 분양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산업단지	산업단지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분양 성공 사례				
기 ㅠ 야초이버셔어다기	인근 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 인천지역내 기존단지 실거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래가에 비해 20~30% 저렴한 금액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아산테크노벨리	분양가 인하로, 조성원가 2/3 수준으로 분양하여 성공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근 일반·농공단지 매매가와 유사한				
김해일반산업단지	수준으로 분양. 특히, 부산·창원 국가산업단지 실거래가에 비				
	해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				

(산업단지 분양률 추이분석과 분양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11.12)

○ (해외사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도 산업단지에 대한 직접적 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산업집적지 형성 노력

국가	지원 내용
	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미국	(예) 현대자동차 앨라바마주 유치시- 부지제공과 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
	면, 보세지역 지정 등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직·간접적 지원
일본	기업입지촉진법(2007),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집적지(클러스터) 형
글亡 	성, 산업재배치촉진보조금 및 세제감면, 설비투자보조금 등 혜택 제공
영국	사업투자보조금(Grnat for Business Investment, 2008), 낙후지역 및 지역투자
0 1	활성화 촉진 위해 사업투자보조금 지원, 낙후도에 따라 보조금 차등
프랑스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투자우선지원지역에 대해 신규사업, 기존 사
_ = 5 =	업 확장 및 변경 등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
독일	투자인센티브법,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과제와 구동독 지역 대상 특별 투
_ <u></u>	자 촉진 프로그램 운영, 조세감면 제공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11.09)

○ (국가 정책 역행)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배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

<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

그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외국인투자, 제주투자진흥기구,
국세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 법인세 감면
투자활성화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책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업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 투자 확대에 입지와 자금, 인력, 연구개발 등
경제약간 3개인 계획	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자료: 기재부, 국세통계연보)

[개선방안]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제도를 '16. 12. 31까지 연장
- 제7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②하는 부동	②
	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	2016년 12월 31일
	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6년 12월 31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	<u>일</u>
	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례제한법 제78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u>2016년</u>
세/0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u>12월 31일</u> .
	2.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산업단지 또	
	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	
	사가 끝난 토지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가. 신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	
	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2016년 12월 31일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	
	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001614 1081 0101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2월 31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항공운송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4년도까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내·국제 항공운송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항공기 취득세 100%,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

[문제점]

- (일자리 창출 저해) 항공업계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일 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유일한 과세특례의 폐지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 최근 3년간 항공운송업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4.6%(신규일자리 약 4천개)로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 평균 증가율 2.4%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우리나라	1.715만명	1.749만명	1,776만명	1.841만명	2.4%
임금근로자수	1,71028	1,7 40 2 8	1,77028	1,0+1 = 8	2.470
항공사	2.5만명	2.8만명	2.9만명	3만명	4.6%
임금근로자수	2.5단당	2.0단당	2.9단당	3E 8	4.0 /0

-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악화) 경쟁국가의 항공운송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외국 항공사들의 주요 수익노선의 외항사 점유율 증가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일본·중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대부분의 경쟁국가는 자국 항공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항공기에 대해 취득·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중국	'11년 ^{~'} 16년까지 항공사 등 255조 지원중,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미국	항공사 영업손실 40억불 직접 지원			
이보	JAL 2조 6천억원 지원, 해외투자 및 사회공헌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본 취득세 비과세, 재산세 국제선 운항비율에 따라 최대 9/10까지 감면				
UAE	유류비 및 세제 등 항공사 직접 지원			

- 일본·중국·동남아·유럽 등 항공사 주요 수익노선의 외항사 점유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적사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자료: 한국항공진흥협회)

- (저비용항공사 육성 저해)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최신형 항공기 도입과 적극적 노 선개발로 사업다각화에 총력을 경주중이나 추가 세부담은 성장 동력 확보에 제약
- 특히, 정부는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저비용항공사의 부담을 급증시킴 (자료: '14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14.4)
- **(국민교통편익 제고)** 국적 항공사의 비용 부담 증가는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및 운임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어 국민편익 감소 및 외항사와의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 항공사의 누적적자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운임단가 상승으로 항공운송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 국적항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평균
매출액	145,065	135,461	170,455	179,452	190,454	186,036	1,006,923	167,821
영업이익	△1,989	△1,643	17,069	7,244	3,888	△514	24,055	4,009
순이익	△22,235	△4,344	6,622	△2,998	2,890	△4,113	△24,178	△4,030

(자료: 한국항공진홍협회, 8개 항공사 취합)

- 지방세 부과로 증가된 비용이 항공요금에 100% 반영될 경우, '15년~'17년간 약 2 천 7백억 원의 국민편익이 감소 할 수 있음
- * 일몰 이후 '15년~'17년간 취득세 1.520억, 재산세 1.199억 증가, 총 2.719억 부담 증가 예정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100%로 조정하고, 감면 기한 또한 3년 단위로 운영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지 방세 특 례 제 한법 제 65 조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제1항 제4호의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항공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의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현 행]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

[문제점]

- 근로자 대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다수의 기업들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세대 신입사원의 작업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폐지될 경우 기업 부담 가중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개선방안]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세 감면기한 연장 (일몰기한: 3년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현 행]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 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문제점]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감면 일몰 시, 기업 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신규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산업경제를 위축하 는 결과를 초래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기술개발을 통한 신기술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불가하므로, 적극적인 세제감면을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개선방안]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세 감면기한 연장 (일몰기한: 3년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지방세특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례제한법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제46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2 <u>01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 한다.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현 행]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재산세 부과 시 기업부설연구소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직업훈련시설은 10배를 부속면적으로 인정하여 감면받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한해서만 감면 적용

[문제점]

-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조세부담 가중
-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특성상 건물 외부에 기타 보육 공간(놀이터, 자연학습장) 등 부속면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면적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부속면적으로 간주 필요

[개선방안]

-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와 차세대 양육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조세 감면기한 연장(일몰기한: 3년 연장)
-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부속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로 규정하여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19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 【영유이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	①
	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	
	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	<u>2017</u>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년 12월 31일까지</u>
I 지방세특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
례제한법	재산세(중략)와 「지방세법」 제146	
제 19조	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u>2017년 12월</u>
	31일까지 면제한다.	<u>31일까지</u>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1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
		의 10배 이내)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현 행]

○ 관광호텔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실시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지한법 제54조)

[문제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 세특례 제도가 2014년12월 31일 일몰로 관광호텔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사료되 는 바,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몰시한을 연장하여 줄 필요 있음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 대해 일몰 기한 3년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빙	·세특	②「관광진흥법」(생략) 2014년12월31일까	(생략)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 재산세의 100분의 50(특1등급, 특2등급	
		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 신설

[현 행]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배제

[문제점]

- (이중과세 문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외국에 서 부담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다시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임
- 우리나라에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선택
- *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7조), 개인거주자(소득세법 제57조)
- 또한, 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실질적 감면의 성격이 아님을 인정하여 최 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
-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감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14.3)
-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많으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를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세 감면이 아님" (기재부, 보도해명, '14.2.11)
 - ※ (해외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1) 외국소득면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손금 산입 등을 통해 자국법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기업 해외진출 촉진과 국내·해외투자간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 차원의 이중과세 방지규정 운영중
- (해외진출기업 역차별) 해외진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세부담 차이 유발
-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해외수익 국내 송금시 외국납부세액이 익금산입, 지방소득세 과표를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이월세액공제 경과규정 마련

[현 행]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배제

[문제점]

- **(예측가능성 침해)** 이월세액공제 배제는 舊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한 법 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시키므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기업은 既투자 결정시 舊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공제액 예측
-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납세자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 필요
- * 경과규정(예): 조특법 부칙(법률 제12173호 제66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기업간 형평성 문제) 동일한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가 발생했음에도, 현행 지방세법 적용으로 기업간 지방소득세 부담 차이 발생
- A·B社 모두 동일한 300의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13년 이익 차이로 이 월세액공제가 발생한 B社만 '14년 지방소득세 납부
- * 이월세액공제 적용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 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3가지

	2013		
	A社 B社		
산출세액	300	100	
- 공제세액	300	100 (공제) 200 (이월)	
지 방소득세 (법인세액 10%)	0	0	

2014			
A社	B社		
	개정전	개정후	
│ │ * '13년	200	200	
투자세액공제	200	0	
300 받음	0	20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월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구법(舊法)을 적용하도록 부칙 개정
 -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175호 제6-1호, 2014.1.1.>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세액공제 · 감면 조항 신설

[현 행]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배제

[문제점]

○ (중소기업 부담급증) 중소기업의 70%가 법인세 납부액의 24% 이상을 공제·감면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예정

〈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활용률 및 혜택 비율 〉

전체 중소기업수(A)	공제감면적용 기업수(B)	공제감면 활용률(B/A)
223,096	157,678	70.7%
총부담세액(A)	공제감면세액(외납제외)(B)	공제감면비율(B/(A+B))
7.2조	2.3조	24.24%

- * 공제감면 활용율= 공제감면 적용 기업수/전체 기업수(법인세 납부기업 한정)
- * 세액공제 감면비율 = 공제감면세액/(총 부담세액+공제감면세액) (자료: '13 국세통계연보)
-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배치. 정부 정책 실효성 감소 우려

〈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워 〉

국세(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	
국제(오제국네제인립)	별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10년 비田게저야	유망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	
'13년 세법개정안	생협력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세제지원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상생협력 통한 생산성 혁신 등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저해) 법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유인이 상실되며, 법인전환 우대정책과도 배치됨
-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촉진을 위해**. 법인전환시 **세제혜택**을 규정
 -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32조, 제120조 제5항) 및 부가세 과세제외 등
- 기업유형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는 영세한 소규모기업의 지방소득세 부담을 증가 시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유인 떨어뜨림
 - * 종사지수 20인 이하 소규모 기업 비중: 40만개 중소기업 중 33만개, **82%** (통계청, '12)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연구개발 관련 공제·감면 조항 신설

[현 행]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배제

[문제점]

- (R&D투자 위축)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조세부담 증가로 R&D투자 위축 우려
- 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중 역시 커지고 있음
 - * 기업 연구개발 투자액: '08년: 26조 → '09년: 28조 → '10년: 32조 → '11년: 38조 → '12년: 44조
 - * '12년 연구개발비 구성(%): 기업 78%, 공공(국공립) 13%, 대학 10% (자료: 과학기술통계)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유인의 효과가 있어 기업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
 - * 조세지원액 1% 증가시 추가 연구개발 투자 0.46% 유발 (손원익. '06)
 - *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 6,000명 일자리 창출 (하준경, '12)
- (정부정책 역행) 기업 연구개발 관련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는 정부 핵심 국정과 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지원 정책과 배치

정부 140대 국정과제	민간 R&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기술규제 완화 추진 등
2014년도 조세지출	기초연구, 지식개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세제 지원
기본계획 (기재부)	유지하되, 실질적 유인 될 수 있도록 효과적 개편

- (부담 규모 급증) 연구개발 세액공제·감면 금액 중 법인세 감면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기업의 지방소득세 부담 규모 급증
 - * 기업 R&D관련 공제·감면 부담 규모: 2조 7.012억원 × 10%= 2.702억원 ('12년 기준)

항 목 (단위: 억원)	법인세	소득세	합 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256	311	25,567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548	4	1,552
기술취득 과세특례	3	6	9
연구개발특구 법인세 감면	205	0	205
합 계	27,012	321	27,333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내국법인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공제·감면 규정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공제·감면 조항 신설

[현 행]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배제

[문제점]

○ (투자·고용 악화) 세부담 증가에 따라 기업 투자여력 약화, 이로 인해 고용 1.3만 명, 생산 2조원 등의 사회적 손실 발생 우려

〈 투자 축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 〉

세부담 증가		투자 축소		사회적 손실
9,500억원	\Rightarrow	9,500억 원	\Rightarrow	고용 1.3만명 손실
9,500억원		9,500 극 편		생산 2조원 손실

- * 고용·생산 손실은 투자축소 금액에 2010년 산업연관표상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13.6명), 생산유발계수(2.1)를 각각 곱하여 계산
- (정부 정책 역행)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정책에 역행

〈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

'13년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제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세법개정안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업종 확대 등
조세지출평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지방투자, 서비스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청년,
운영방향	경력단절 여성, 고졸자 등 고용 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 (지원 확대 필요) 세제지원은 기업의 지역 투자・고용 결정시 중요 고려 요인
- 공제·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 부담
 - * **투자,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 고려 정도**(전경련, '13.6): 약간·많이 고려(81.5%), 고려하지 않음(17.0%), 기타(1.5%)
 - * **공제감면제도 축소 영향**(전경련, '13.6):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 창업활성화 저해(1.5%), 기타(3.9%)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내국법인의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공제 감면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제·감면 조항 신설

[현 행]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배제

[문제점]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효과 반감)** 지방이전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여 지역발전 취지의 세제감면 효과 축소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정책취지와 상반됨

〈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

그 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외국인투자, 제주투자진
국세	흥기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 법인세 감면
트기하셔링 미웨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국제자
투자활성화 대책	유도시 등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경제혁신 3개년	기업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 투자 확대에 입지와 자금, 인력, 연구
계획	개발 등 지원 발표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자료: 기재부, 국세통계연보)

○ (예측가능성 침해) 지방소득세 개정전 舊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특정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기로한 기업들에 대한 예측가능성 침해

〈지역이전 기업 대상의 기간 세액감면 〉

항 목	근 거	기간	세부 내용
법인 공장 수도권 외 이전	조특법 제63조의 2	10년	7년 100%, 3년 50% 법인세 감면
수도권외 지역 소재 이전	조특법 제63조의 2	7년	5년 100%, 2년 50%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2	7년	5년 100%, 2년 50% 법인세 감면

○ (외국기업 불신 초래) 외국투자법인이 국내 투자 결정시 예상했던 조세혜택의 변화 는 국내 투자 환경을 변화시켜 외국기업 유치 노력에 악영향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내국법인 지역활성화 관련 공제·감면신설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현 행]

○ 현재 송전철탑(20만 볼트 미만, 주민요구 제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너지공급 시설로서 재산세도 동시에 부과되고 있음

[문제점]

- 현재「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가스관"및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공사와 사업자의 "열수송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사업자가 시설하는 "송전철탑" 또한 가스관과 열수송관처럼 도관시설의 일부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그성격과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스관, 열수송관에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 3항 송전철탑 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61조【생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신설)	제61조【생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
지 방세 특 례 제 한법		된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사업법」제 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송전철탑(지방세
제61조		법 시행령 제 5조 1항 6호의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송전철탑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산업단지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건의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현 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의거 신축, 대수선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음

[문제점]

- 국세(조특법)의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없음
- 에너지절약시설: 고효율인증보일러(10%이상 향상), 냉공조(제습/가습)장치, 고효율변압기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거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개선방안]

- 산업단지 내 시설투자에 한하여 지방세 100% 감면
- 에너지절약시설 (확대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 방세 특 례 제 한법 제78조	(생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세를 감면한다. (2011, 12, 31, 개정)(생략) 라. (신설)	(생략) ④

XI. 지방세기본법

후발적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현 행]

○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60일 내 수정신고를 허용하되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舊)지방세법 제71조)

[과 거]

- ① 취득시기(준공일) 🗘 ② 원시신고(30일 이내) 🖒 ③ 후발적 사유발생(공사비 정산, 건설 이자 등으로 세액변경시)/ 상당기간 소요 🖒 ④ 수정신고 가능(후발적 사유 발생시 부터 60일 이내) 🖒 납부세액 부족 발생(가산세 없음)
- 지방세 분법('11년 시행) 이후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수정신고 사유 및 기간을 제한하지 않되 수정신고 사유에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함
 - * 지방세 분법: 종전의 지방세법이 '11년 이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 同 조항은 수정신고시 '정당한 사유'로 발생한 수정신고 인지를 과세관청이 판단 하여 가산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됨 (지방세기본법 54조 1항)

[문제점]

- '11년 지방세법 체계 개편 당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 고 기회를 확대한 바 있으나,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이후 후발적 사유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가산세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취지와 달리 납세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현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54조 1항)은 가산세 감면 관련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부족,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당시 **공사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 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함
-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사실상 사용을 시작하고 보완, 정비(도로복구 공사 등) 및 검수를 진행하므로 임시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과세표준이 변동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철탑 등 전력설비 건설업체의 경우 철탑취득시기(가압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이후 6~12개월 정도 지나야 철탑 취득과표에 포함될 진입도로 정비(도로복구 공사 등) 및 지역지원사업비 등 공사원가 및 부대비용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과세 표준 변동이 불가피함
- 현재 지방세법 기준하에서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불이익 회피하고자 '확 정되지 않은 공사비 금액을 10~15% 과다추정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 납 부'하므로 선량한 **납세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다시 **과다 납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불필요한 업무과중 유발**함

[개선방안]

- 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 후발적 사유와 업종별 특성으로 인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 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종전과 같이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면제되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 가산세 감면 관련 **후발적으로 발생한 "정당한 사유"**를 **舊지방세법 제71조의 요** 건으로 구체화, 명문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50조 【수정신고】	제50조 【수정신고】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2011년 지방세 개정전 수정신고 내용	④ <신설>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
	- 추가' 신설	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 가액 등이 공
		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
		오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지방세		<u>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u>
'		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
50, 53조		하게 계산할 수 없었거나 그 후 당해 사
		유가 소멸한 경우
		⑤ <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를 한 경우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과
		<u>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제77조</u>
		<u>(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52초이 2 『교스사고기사세》	제53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③ 제1하 및 제2하에도 부구하고 시고 다시	제53조의 3 【파소신고가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과세표준액 및 세
	크지 아니아어 파도선교인 경구에는 가전제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
	르 구되어서 어디진다. 	사비의 정산, 건설자금 이자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되
		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기본법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1항에 따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1항에 따
제54조	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	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
	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로 정하는 취득세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등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① ~② 생략	① ~② 생략
	③ <신설>	③ <신설> 법 제50조 제4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
		<u>결이 있는 날</u>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u>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중빙서류를 되돌려</u>
지방세법		<u>받는 날</u>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시행령		에는 법인의 청산 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
제29조,		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5조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④ <신설>	④ 법 제54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수정신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
		여 취득세를 수정 신고 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
		고 기한 경과후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
		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
		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
		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排 당에 있어서 증상류의 압수 또는 밥의
		창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
		확하게계산할수없었으나그후당해사유가소멸한경우

XII. 기타 법률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 일원화

[현 행]

- 석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후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 그 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시,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신고기한 차이로 혼선을 초래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 재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1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제1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봄

[문제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과세물품(휘발유, 경유)과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등유, 중유, LPG 등)의 석유류가 혼합되어 품질 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고, 그 환입사실을 다음 달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차이로 환입 신고 시 혼선 초래

[개선방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기한 일원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날이 속하는 달의 <u>다음 달 말일까지</u>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교통·에너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ㆍ에너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 • 에너지
환경세법	• 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 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제 17조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 이내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
	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현 행]

○ 소비전력량이 큰 전기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문제점]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개별소비세 대상 기준이 낮아 서민들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
-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대형화 추세로 개별소비세 대상이 더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보편화된 물품임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 오히려 서민들이 소비에 부담을 갖게 됨

[개선방안]

○ 전자제품의 대형화 추세 및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하여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가. 전기냉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가. 전기냉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	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
	방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따라	방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따라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u>500kWh</u> 이
	,	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정격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0kW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냉장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_	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
		장고로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따라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
' = '	, '	인 것으로 한정하며, 용량이 <u>800L</u> 이하 인 것은 제외한다.
세법 시행령	인 것은 제외한다.	한 것는 세되한다.
	 다 저기세탁기: 「에너지이용 한리화	 다. 전기세탁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필요]] 7항	법 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드	
'8		럼세탁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따라 측정한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라.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용품안전 관	라.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용품안전 관
	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	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
	품 중 텔레비전수상기로서 기술표준원	품 중 텔레비전수상기로서 기술표준원
	장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정격소비전력이	장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화면의	<u>700W</u>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인 것	대각선 길이가 <u>127cm(50형)</u> 이하인 것
	은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홈텍스'상 피합병법인의 내역 확인기능 추가

[현 행]

○ 국세 및 지방세 납부가 전자신고 납부로 진행되고 있음

[문제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전자신고 내역 또는 과세내역에 대해 조회 불가능
 - 기존 신고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시 대응에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 합병법인의 공인인증서로 피합병법인의 과세내역이 조회 가능 하도록 개선